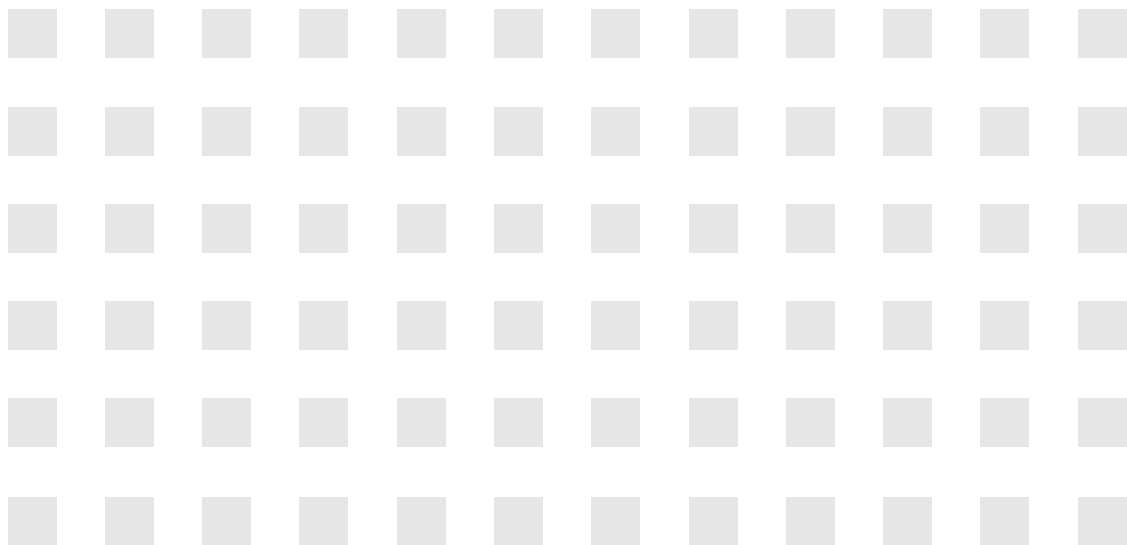


제주지역 사회적은행 설립 방안 연구

정운영 · 이종익 · 이정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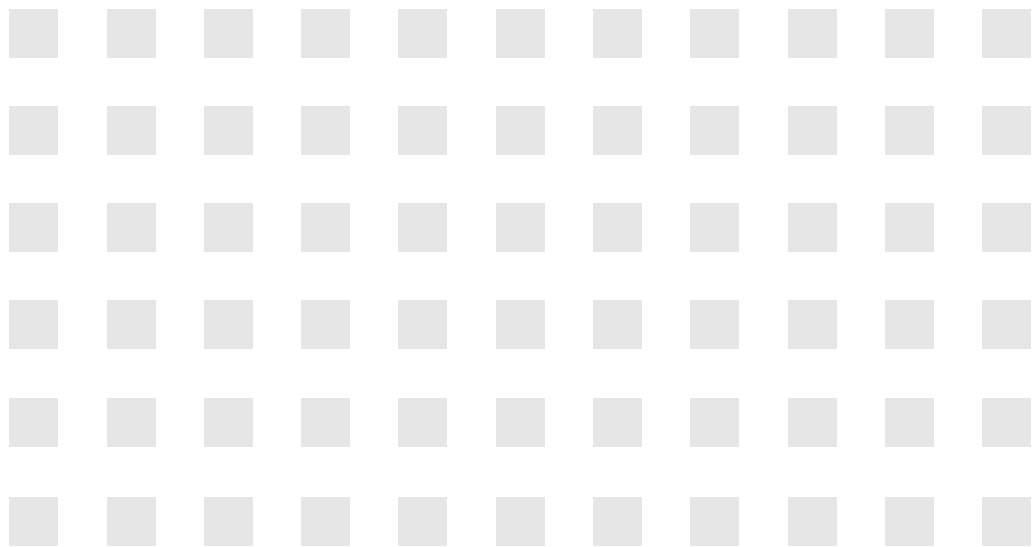


JRI

제주지역 사회적은행 설립 방안 연구

—

정운영 · 이종익 · 이정민



발 간 사

우리 사회는 현재 소득불평등, 양극화 심화, 금융소외, 지역불균형 및 기후변화 등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금융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정부주도로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한시적인 정부 정책이 아닌 지속적인 금융을 위해서는 사회적금융시장 확대가 필요하며, 사회적은행 설립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제주는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의 80%가 넘어 금융서비스 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적은행 설립이 큰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제주가 당면하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과 산업 고도화, 미래 산업 기반을 신속하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 펀드의 투자자금과 기존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금 공급보다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설립되는 제주형 사회적은행에 의한 금융서비스가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제주형 사회적은행 설립을 위해 제주의 사회적금융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외 사회적금융, 사회적은행 사례를 검토하여 제주형 사회적은행 설립전략과 실행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설립을 위해 법적 검토뿐만 아니라 운영을 위한 사회적가치평가, 자금조달방안, 상품 운영방안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주형 사회적은행은 각 법률상 필요요건을 갖춘다면 어떠한 형태로든지 설립될 수 있으나 설립 인가자의 의지가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으므로 사회적은행의 차별성과 사회적 효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금융당국 또는 제주도청과 협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주형 사회적은행만의 독자적인 가치척도와 평가기준을 통해 사회적가치를 측정한다면 기존 금융기관과의 차별성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도의 미래 산업 전략에 맞추어 미래지향적이며 가치지향적인 분야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금 공급 대상 중 기업에 대한 평가와 분석은 좀 더 명확한 기준으로 성장단계와 산업별로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주형 사회적은행이 설립된다면 제주도민과 제주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역개발금융기관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향후 본 연구가 제주의 사회적은행 설립에 기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3년 3월

제주연구원장 양 덕 순

목 차 CONTENTS

I. 서론	1
1. 사회적금융과 사회적은행의 의의	1
1-1 복합위기 시대의 금융의 역할 / 1	
1-2 사회적금융과 사회적은행의 의의 / 1	
1-3 관련 선행연구 동향 / 2	
2. 제주지역 사회적은행 설립 필요성	4
3. 연구의 목적 및 내용	4
3-1 연구목적 / 4	
3-2 연구내용 / 5	
II. 사회적은행의 국내·외 동향	6
1. 국내 현황과 사례	6
1-1 사회적은행 설립의 어려움 / 6	
1-2 대부업 형태의 사회적금융기관 / 7	
1-3 비영리법인 형태의 사회적금융기관 / 8	
1-4 사회적은행 설립을 위한 움직임 / 10	
2. 해외 사회적은행 현황과 사례	12
2-1 해외 사회적은행의 특징 / 12	
2-2 일반은행 형태(네덜란드 트리오도스 은행) / 13	
2-3 협동조합은행 형태(독일 GLS 은행) / 17	
2-4 신용협동조합의 형태(캐나다 밴시티 신협) / 20	
2-5 특별법령에 의한 은행 형태(방글라데시 그라민은행) / 24	
3. 제주지역 사회적금융 현황	26
3-1 제주 중소기업 현황 및 금융 지원 현황 / 26	
3-2 제주 인증 사회경제적 기업 현황 및 금융 지원 현황 / 30	
3-3 제주 금융기관 현황 / 32	

4. 요약 및 시사점	33
Ⅲ. 제주지역 사회적은행 설립방안	36
1. 법·제도적 검토	36
1-1 「은행법」 및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상 설립 검토 / 36	
1-2 「상호저축은행법」상 설립 검토 / 42	
1-3 「신용협동조합법」상 설립 검토 / 45	
1-4 「새마을금고법」상 설립 검토 / 48	
1-5 특별법을 통한 사회적은행 설립 검토 / 52	
2. 운영을 위한 실행방안	54
2-1 사회적 가치평가 / 54	
2-2 자금조달 방안 / 58	
2-3 고도화 상품 운영 방안 / 60	
2-4 기타 운영 방안 / 61	
3. 설립 추진 전략	62
3-1 핵심 가치 / 62	
3-2 법률적 환경에 따른 검토 / 64	
3-3 설립 추진 방향성 / 68	
4. 요약 및 시사점	70
Ⅳ. 결론 및 정책제언	73
1. 결론	73
2. 기대효과 및 한계점	75
참고문헌	76

표차례

〈표 1〉 은행 설립을 위한 국가별 최저자본금 요건	6
〈표 2〉 트리오도스 은행그룹 구조	13
〈표 3〉 트리오도스 은행의 주요 사업	14
〈표 4〉 트리오도스 은행의 핵심가치	14
〈표 5〉 GLS 은행의 투자 기준	19
〈표 6〉 은행법 및 인터넷전문은행법상 은행 인가요건	40
〈표 7〉 상호저축은행법상 은행 인가요건	43
〈표 8〉 신탁법상 신탁 인가요건	47
〈표 9〉 새마을금고법상 새마을금고 인가요건	51
〈표 10〉 사회적 가치(영향력)의 다양한 정의(예)	54
〈표 11〉 SVI, 사회적가치지표 총괄	56
〈표 12〉 K-ESG 지표	57

그림차례

〈그림 1〉 제주형 사회적은행 가치창출 모델	68
〈그림 2〉 설립준비를 위한 실행단계	70
〈그림 3〉 제주형 사회적은행 기대효과	75

연구요약

I. 서론

-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시스템은 수익성과 위험성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기에 현재의 복합위기를 극복하는 ‘금융’의 역할로는 한계가 있음
- 복합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곳에 자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금융의 역할은 절대적으로 중요해짐
- 이러한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사회적 금융시장 확대와 사회적 가치 창출기업에 지속적인 금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역부족임.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사회적은행 설립이 바람직함
- 재정자립도가 취약하고 고부가산업의 발달이 취약한 제주지역의 경제 주체들에게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금융서비스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감당할 제주형 사회적은행의 설립을 검토함

II. 사회적은행의 국내·외 동향

- 국내에 사회적은행은 존재하지 않으나 2018년 금융위원회가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사회연대기금설립 등 사회적금융의 양적 성장이 이루어져 사회적은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해외 사회적은행은 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설립 형태에 따라 설립 요건의 차이는 있지만,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면서도 재무적 수익을 동시에 창출할 수 있는 은행들이 금융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 일반은행 형태인 네덜란드 트리오도스(Triodos)은행, 협동조합은행 형태인 독일 GLS은행, 신용협동조합 형태인 캐나다 밴시티(Vancity) 실험, 특별법령상의 은행인 방글라데시 그라민(Grameen)은행을 통해 각 은행별 지배구조와 운영원칙을 살펴봄
 - 활성화되고 있는 사회적 은행들은 대출과 투자 심사를 엄격하게 수행, 특히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사업 또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고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신뢰를 주고 있음

- 해외 사회적은행들이 일반은행들과의 경쟁 속에서 지속적인 성장 및 발전하는 것을 볼 때 국내에서도 설립된다면 민간 금융시장에서 경쟁하며 성장할 것으로 보임
- 제주 중소기업과 제주 인증 사회경제적기업의 현황 및 금융지원 현황, 제주 금융기관 현황을 통해 제주지역 사회적금융 현황을 살펴봄
 - 제주 지역에는 6만개가 넘는 많은 중소기업이 있고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주 업종이 규모가 영세한 도소매와 음식업에 집중되어 있어 기업의 성장에 따른 고용의 증가, 도내 경제적 가치 증가 등에는 한계가 있음
 - 제주 사회경제적기업을 위한 금융 지원 효과는 타 지역 보다 월등한 것으로 판단됨. 제주기업의 정책자금 지원 효과 분석 연구에 따르면 제주 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금융지원을 받은 기업의 성장성, 수익성, 생산성, 활동성이 받지 않은 기업에 비해 타 지역보다 우월한 것으로 분석되어 제주형 사회적은행과 같은 은행으로부터의 지원의 효과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제주 지역 대기업, 공사 등은 사회적금융 기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제주 경제의 큰 역할을 담당하는 대기업, 공사, 기관의 사회적금융 기여도는 소규모 사회공헌 차원에 그치고 있어 사회적금융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 우수한 관광,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한 환경, 생태, 힐링 등 고부가 관광산업 고도화를 지원하고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농수축산업 분야와 연관된 친환경 혁신 농수축산업, 바이오 등 산업 고도화를 선도하는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이 필요함

III. 제주지역 사회적은행 설립방안

- 제주형 사회적은행 설립을 위한 법·제도적 검토를 한 결과 은행법, 인터넷전문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신탁법, 새마을금고법, 특별법을 통해 설립이 가능함. 그러나 각 법마다 사회적은행 설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상이함
 - 은행법에 따라 사회적은행을 설립할 경우 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나 다른 법에 의해 설립될 경우 저축은행, 신탁, 새마을금고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함
 - 은행법상 자산건전성 등 규제요건이 엄격하고 저축은행법이나 신탁법의 경우 그 요건이 보다 완화되어 있지만, 실제로 금융당국에서는 선제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자본비율 등 권고 기준을 법 상 기준보다 높게 두고 있다는 점에서 설립 이후에도 은행으로써 예금자보호, 신용질서 유지 등 은행의 사회적 역할이 중요함

- 제주형 사회적은행의 사회적가치 측정 지표는 사회적금융의 미션과 비전을 실행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해야 하므로 기존 국내외 다양한 지표들을 활용하여 제주만의 독자적인 가치 척도와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자금조달방안으로는 제주형 사회적은행의 설립에 따른 최소 자본금은 설립될 은행이 어떤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가에 따라 정해질 것이며 자금 확보 방안도 설립 관련 근거법에 따라 확보 자금이나 방법이 정해져야 함
 - 최초 설립자본금 납입을 위한 자금 확보 방안은 크게 자체적인 자본 조달, 주주에 의한 자본조달, 연기금의 출자, 도내 대기업, 공사의 출자, 도민에 의한 출자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고도화 상품운영을 위한 방안은 도의 미래 산업 전략에 맞추어 미래지향적이며 가치지향적인 분야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금 공급 대상 중 기업에 대한 평가와 분석은 좀 더 명확한 기준으로 성장단계와 산업별로 수행하여야 함
 - 모든 수신 상품은 수신 자금의 용처와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여신이나 투자를 통해서 창출되는 사회적 임팩트를 예금자에게 주기적으로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가치(이자)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같이 제시하여 예금자의 참여 확대를 추구해야 함
- 그 외 점포의 최소화 및 비대면 거래 확대방안을 모색하되 대출이나 투자를 위한 상담과 사회적가치, 리스크평가 등 비대면 거래를 위한 지역 거점 상담 센터(예: 제주, 서귀포 시내 및 동, 서부지역)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제주형 사회적은행 신용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저금리 운용과 저금리조달을 해결하기 위한 자율적 여신 의사결정권 확대 시스템구축과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전문성 있는 인력의 확보와 양성이 필요함
- 실제 제주형 사회적은행 설립을 위한 추진 전략으로 제주형 사회적은행의 핵심가치를 제안하고 법률적 검토를 통해 양적 조건과 질적 조건에 대한 제반 상황 등 다양한 여건들의 중요성을 제시함. 또한 이를 실제 실행하기 위한 가치창출 비즈니스 모델과 추진방향성, 설립준비를 위한 실행단계를 제안함
 - 제주형 사회적은행은 농업, 관광 등 기존 제주지역 산업의 고도화와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같은 미래 산업의 적극 육성을 선도하는 목표를 가지고 급증하는 도내 사회적금융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의 재정자립도 증대 및 지역 내 사회적 자본

의 확충을 이끌 것 임: 이러한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주형 사회적은행은 ① 고객 존중, ② ESG가치 중시, ③ 관계와 소통 기반 운영, ④ 혁신 기술 추구, ⑤ 지속가능성 추구하고 같은 핵심 가치를 제안함

- 제주형 사회적은행은 각 법률상 필요요건을 갖춘다면 어떠한 형태로든지 설립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함. 다만 법률상 정량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사업계획, 자금조달방안 등 정성적 요건의 경우 평가자의 설립 의지가 인가에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으므로, 사회적은행의 차별성과 사회적 가치, 효과에 대해 금융당국 (또는 지방자치단체)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야 할 것임
- 제주형 사회적은행은 기존 금융기관들이 ESG와 연계된 여·수신 상품을 출시하여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차원 이상으로 금융상품 뿐 아니라 자금조달과 자금운용 방안부터 리스크 관리까지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방향에 따라 수익창출 모델이 마련되어야 함. 따라서 제주형 사회적은행은 제주의 미래 성장 지향, 소셜 임팩트 지향, 사회적 연대를 반영한 관계금융모델을 통해 관계 지향, 운영 최소화를 위한 제주 지역 ICT 대기업과의 협력으로 은행 운영시스템(IT 시스템) 효율화를 지향하는 방안을 제안함

IV. 결론 및 정책제언

- 제주지역은 중소기업의 비중이 매우 높아서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관광, 농업, 유통 분야이고 특히 환경, 지역 경제 및 고용 측면에서 사회적가치가 매우 높은 사회경제적 기업임. 또한 첨단농업,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등 미래 산업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혁신기업의 유입이 크게 늘고 있어 사회적은행의 자금공급 효용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됨
- 하지만 기존 금융기관에 의한 금융 공급규모는 수요에 비해 매우 작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금융상품보다는 담보나 보증에 의한 소액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금융의 선순환으로 인한 가치 창출 기능이 매우 낮은 상황임. 이에 따라 제주의 특성인 관계형 사회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은행이 금융의 선순환 효과를 내기에 매우 좋은 기반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사회적은행은 대안 신용평가에 기반한 자금공급 및 안정적인 실물 자산 위주의 상품운영으로 해외에서도 수신이 계속 늘고 있음. 여러 번의 글로벌 금융 위기에서도 오히려 성장이 계속되고 있고, 최근 모든 분야에서 ESG 가 확대

되는 세계적 환경 변화에서 투명한 수신과 여신 및 상품은행은 매력적으로 인식될 것으로 예상됨

- 제주가 당면하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과 산업 고도화 및 미래 산업 기반의 신속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 펀드의 투자자금과 기존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금 공급보다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설립되는 제주형 사회적은행에 의한 금융서비스가 더 효과적으로 판단됨
- 특정 대기업이 참여하는 모델 보다는 다수의 대기업(예를 들어 넥슨코리아, 카카오, 호텔신라 등), 공사(예를 들어 제주국제자유도시센터(JDC),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등), 제주은행, 도민(필요 시) 이 함께 자본을 출자하여 설립하는 참여형 사회적은행으로 출범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사회적은행의 안정적이고 규모 있는 자금공급을 통해서 기술혁신 기업 및 고부가 핵심 기술기업의 도내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개발금융으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함. 아울러 사회적은행은 기존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의 사회적금융 상품과 사업모델 확대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임
- 금융상품 즉 대출(신용대출, 브릿지자금 대출, 보증대출 등), 펀드 출자 및 운용 등으로 다양하게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함
- 상대적으로 열악한 제주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전용 금융상품도 운용하여 좀 더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인증 사회적경제기업의 양적, 질적 확대를 꾀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은행이라는 명칭이 낯선 금융소비자에게는 자칫 인증사회적경제기업만 이용할 수 있는 은행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설립목적에 맞는 새로운 은행 네이밍도 고려할 필요 있음
- 사회적은행은 현행법으로도 설립 가능하나, 일반은행들과 달리 사회적은행만의 독립성, 차별성을 위해서는 각 법마다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하지만 법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의 경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각 법상 감독규정을 개정하거나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빠른 설립을 이끌 수 있음.

- 또한 금융당국(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 이미 금융기관들이 과포화상태이고 제주지역에도 상당수의 금융기관이 자리하고 있어 제주형 사회적은행 설립의 필요성과 가치를 명확히 설득하여야 함
- 제주형 사회적은행은 제주도민과 제주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은행으로, 제주지역 금융소비자의 금융서비스 이용 기회와 확대, 인내자본 확대로 자금 공급 확대, 사회적 자본의 선순환을 통한 고부가산업 기반 강화, 지역 기반 중소기업, 벤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기업의 성장을 통해 제주지역 경제 주체들의 경제적 역량이 증대됨으로써 제주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할 것임

I. 서론

1. 사회적금융과 사회적은행의 의의

1-1 복합위기 시대의 금융의 역할

-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핵심문제는 소득 불평등, 양극화 심화, 지역 불균형과 지방 소멸위기, 청년실업증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금융소외 증가 등으로 이러한 문제들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어느 한 경제주체의 노력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상황임
-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시스템은 수익성과 위험성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기에 현재의 복합위기를 극복하는 ‘금융’의 역할로는 한계가 있음
 -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투자, 지역소멸을 예방하기 위한 투자,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는 청년 등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새로운 평가와 투자 등에 기존의 금융시스템은 한계임
 - 현재 정책 서민금융지원은 단기간 문제해결은 가능하나 지속적으로 그 수요를 지원하기 어렵고 상업적 서민금융 위축과 자금 지원만이 아닌 금융포용적 다양한 종합적 접근 방식의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복합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금융의 역할과 이를 수행하는 금융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1-2 사회적금융과 사회적은행의 의의

-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으로, 사회적금융은 이러한 사회적경제 기업과 조직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나 공공부문 사회적금융은 정책방향 흐름에 따라 변동성이 크고 사회적경제 성장에 따른 자금을 수요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복합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금융 즉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곳에 자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금융의 역할은 절대적으로 중요해짐
 - 사회적금융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재무적 이익과 함께 추구하는 금융으로, 통상적으로

국내에서는 대부분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기업에 투자, 융자, 보증 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 활동으로 정의함¹⁾

- 그러나 최근 사회적금융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활동이 우수한 기업 등에 투자하는 사회적책임투자(SRI)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음

■ 이러한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사회적 금융시장 확대와 사회적 가치 창출기업에 지속적인 금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역부족임.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사회적금융을 주 목적으로 하는 해외의 사회적은행과 같이 여·수신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제도권 금융기관 설립과 시스템 구축이 절실히 필요함

■ 사회적은행은 기존 금융기관들의 ESG와 연계된 여·수신 상품을 출시하여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차원 이상으로 금융상품 뿐 아니라 자금조달과 자금운용방안부터 리스크 관리까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방향성을 추구해야 함

- 따라서 이윤, 사람, 환경을 토대로 장기적 관계 형성을 통해 지역사회와 실물경제에 기여하며 투명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모델을 개발하고 실행해야 할 것임

1-3 관련 선행연구 동향

■ 사회적금융 및 사회적은행과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의 동향을 살펴보면, 국내에서는 사회적금융 활성화 정책에 따라 사회적은행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일부가 사회적은행에 관련된 연구를 추진하고 있고 해외 연구의 경우 사회적은행의 개념 및 필요성에 대한 연구²⁾, 사회적은행과 기존 은행의 사업 모델 및 경제적 효율성 등을 분석한 연구³⁾, 은행시장에서 사회적은행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금리의 중요성을 분석한 연구⁴⁾ 등 이론적 분석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충남연구원의 경우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전략으로 사회적은행 개설 및 육성방향에 대해 연구함⁵⁾

- 사회적금융의 개념 및 현황, 국내외 사례, 사회적금융 정책동향과 충청남도의 사회적금융 과제, 사회적은행 설립방안을 주된 연구로 진행함

1) 관계부처합동,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2018.

2) Benedikter, Roland. “Social Banking and Social Finance”, *SPICE Stanford*. Spring, 2011.

3) Mykhayliv, D. & Zauner, K. “The financial and economic performance of social banks”, *Applied Economics*, 50(34-35), *City Research Online*, 2018.

4) Cornée, Simon & Kalmi, Panu & Szafarz, Ariane. “The Business Model of Social Banks”, *Kyklos*, Vol.73(2), May 2020.

5) 박춘섭·이홍택, “충청남도 사회적은행 개설 및 육성방향”, 충남연구원, 2018.3.

- 그러나 충청남도 사회적은행의 설립보다는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사회투자기금, 사회투자 전문회사 설립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검토했음
- 특히 은행 신규설립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저축은행 인수를 통해 도가 통제할 수 있는 사회적은행 설립을 검토했음
- 경기연구원의 경우 경기도의 낙후된 금융산업의 발전, 적극적인 서민금융시장의 확대 필요성에 따라 기존 해외에 성공한 공공은행과 사회적은행 사례를 고찰하여 경기도 도민은행 설립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⁶⁾
 - 해외의 사회적은행과 공공은행 사례를 살펴보며 사회적은행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으나 사례분석 연구이다 보니 구체적인 설립 방안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음
- 전반적으로 사회적은행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 사회적금융의 개념 정의 및 국내 현황에 대해 분석하고 사회적은행 설립 필요성에 대해 피력한 정도만 제시했을 뿐 사회적은행 설립 및 운영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미비함
 - 국내 사회적금융, 사회적은행 용어가 보편화되어 있지 않다보니 대부분의 연구들이 용어에 대한 정의 및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금융 활성화의 방안 중 하나로 사회적은행이 언급되고 있으나 사회적은행의 필요성에 대해 피력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음
 - 사회적은행 설립에 대해 법적으로 검토한 연구⁷⁾, 사회적은행 해외 선진사례를 소개·분석한 연구⁸⁾, 국내 시중은행들의 사회적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한 연구⁹⁾, 사회적은행의 이자율 책정 범위, 금리 환경 등 특정 조건에 대해 연구한 사례는 있으나¹⁰⁾ 사회적은행의 실제 설립 및 운영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한 연구는 미비함
-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지역 사회적은행 설립을 위한 법적 요건 검토 및 운영방안에 대해 고찰하고 설립 전략을 제안하여 향후 제주형 사회적은행 설립을 현실화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6) 민병길·이상민, “경기도 도민은행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해외 사례 연구”, 경기연구원, 2015.8.
 7) 이정민, “사회적 금융 전문기관 설립을 위한 법적 검토”, 원광법학 제36권 제4호,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12., 이정민·노태석, “사회적 금융 특화은행 설립 방안과 법적 과제”, 은행법연구 제11권 제1호, 은행법학회, 2018.05.
 8) 민병길·김준일, “지역사회적은행 설립에 대한 연구 : 해외사례검토를 중심으로”, 경영경제연구 제44권 제3호, 충남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2022.08.
 9) 이학승, “사회적 은행의 성공요인과 국내 은행에 대한 시사점,” 주간 금융경제동향 제4권 제16호, 우리금융경영연구소, 2014.4.23.
 10) 조복현, “사회적 금융의 다중목표와 호혜성: 사회적 은행의 이론적 기초”, 한국협동조합연구 제36권 제3호, 한국협동조합학회, 2018.12.

2. 제주지역 사회적은행 설립 필요성

- 재정자립도가 취약하고 고부가산업의 발달이 취약한 제주지역의 경제 주체들에게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금융서비스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감당할 제주형 사회적은행의 설립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아울러 저탄소사회로의 전환기에 농업, 관광위주의 제주 산업을 고부화함과 동시에 신 재생에너지, 신소재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혁신 중소기업 및 지역 기반 기업들의 육성과 성장을 금융을 통해 뒷받침하여 제주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토대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 제주지역 부의 양극화와 지역적 양극화 문제 감소 필요
 - 제주산업의 낙후 및 고도화 필요
 - 타 시도 대비 낮은 재정자립도 보완 필요
 - 제주지역 사회적금융 수요 증대에 대응 필요
 - 지역 사회적자본의 확충 필요 및 양적 확대 요구 대응 필요
- 본 연구를 통해 제주형 사회적은행의 설립 전략과 실행방안을 도출하고, 향후 본격적인 사회적은행 설립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함
 - 제주지역 금융소비자의 금융서비스 이용 기회의 확대
 - 제주지역 인내자본 확대로 자금 공급 확대 가능
 - 제주지역 사회적 자본의 선순환을 통한 고부가산업 기반 강화
 - 제주지역 지역 기반 중소기업, 벤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기업의 성장
 - 제주지역 경제 주체들의 경제적 역량 증대

3. 연구의 목적 및 내용

3-1 연구목적

- 제주지역 경제적, 사회적 문제 분석을 통한 제주지역 사회적은행 설립 필요성을 도출하고, 타 지자체 및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제주형 사회적은행 설립방안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향후 실행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 제주형 사회적은행 설립의 필요성 도출
 - 타 지자체 및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제주형 사회적은행의 설립 전략과 방안 제시
 - 향후 실행 과제 제안
- 본 연구는 사회적은행의 의미 및 역사, 필요성 등 광범위하게 사회적은행의 이론적 내용을 검토한 선행연구와 달리 제주지역에 맞는 사회적은행의 실제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짐

3-2 연구내용

- 본 연구는 사회적은행의 의미와 필요성, 국내외 유사사례 연구, 제주지역 현황분석을 통해 제주형 사회적은행 설립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제주형 사회적은행 설립을 위해 기존 사회적은행 설립 사례들을 고찰함
 - 현재 국내에는 사회적은행이 부재하므로 사회적은행과 유사하게 사회적금융을 실천하는 기관들의 사례를 살펴봄
 - 선행연구의 경우 최근 5개년 그 이상으로 사회적은행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국내외 연구들을 조사하고, 연구의 한계점을 분석함
 -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은행을 검토한 보고서를 살펴보고 본 보고서와의 차별성을 도출함
 - 해외의 경우 다양한 사회적은행들 중 설립 형태별로 대표적인 사회적은행의 사례를 살펴봄
- 제주형 사회적은행 설립을 위한 법적 설립요건 검토와 운영을 위한 실행방안과 설립 전략에 대해 검토함¹¹⁾
 - 「은행법」,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특별법」 등 금융기관 설립요건을 검토함
 - 제주형 사회적은행의 사회적 가치평가, 자금 조달 및 운용 등과 관련된 운영실행방안을 제시함
 - 제주형 사회적은행이 가져야 할 핵심가치 및 설립 방향성을 제시함
-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제주형 사회적은행 설립이 가져올 효과와 연구의 한계점 등을 제시함

11) 사회적은행은 「은행법」상의 은행 외에도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의 형태가 설립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가장 사회적은행으로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함

II. 사회적은행의 국내·외 동향

1. 국내 현황과 사례

1-1 사회적은행 설립의 어려움

- 국내의 경우 여수신을 하는 전문적인 사회적은행은 존재하지 않음
 - 현재 국내는 은행 설립이 엄격하다보니 소액자금을 무담보 또는 무보증으로 대출해주는 비영리법인들의 소액신용대출사업과 대부업체들의 용자사업으로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 취약계층들을 위한 금융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은행은 자금중개, 지급결제, 신용질서유지 등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 높은 공공성이 요구됨. 사회적은행을 설립할 경우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관련법에 따라 설립요건 및 유지기준을 갖추어야 함
 - 은행 설립 시 법이 정한 최저자본금 요건 및 자금조달방안, 주주구성계획, 사업계획 등을 갖추어 은행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 그 중에서도 국내에 사회적은행이 설립되지 못한 이유는 은행 설립을 위한 최저자본금이 타 국가에 비해 엄격함
 - 일본, 홍콩, 호주, 캐나다 등 대부분의 국가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단일한 은행업 인가 단위를 운영하나, 최소자본금은 우리나라에 비해 대체로 낮은 수준임¹²⁾

〈표 1〉 은행 설립을 위한 국가별 최저자본금 요건

일본	20억엔(196억원)	미국	Tier1 6%(OCC 기준)
홍콩	2,500만HKD(34억원)	영국	500만유로(65억원)
호주	5000만AUD(404억원)	독일	500만 유로(65억원)
캐나다	5백만CAD(42억원)	스위스	1,000만CHF(한화 118억)

출처 : 금융위원회,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2018.5.2., 22면, 이순호 외 7인,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연구」, 금융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2017.12., 121면.

12) 금융위원회,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2018.5.2., 22면.

- 사회적은행은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재무적 수익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기 때문에 최저자본금, 설비 요건 등 초기 설립 요건보다는 수익성 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사업전략에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함
- 2017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2018년 금융위원회가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사회적금융의 양적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사회적은행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됨
- 이에 따라 일부 비영리법인들이 사회적은행의 설립을 위해 움직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다음에서는 사회적은행은 아니지만 사회적 가치를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대부업 형태의 사회적금융기관과 비영리법인 형태의 사회적금융기관을 살펴보고 사회적은행 설립을 위한 동향을 살펴보고자 함

1-2 대부업 형태의 사회적금융기관

- 현재 주식회사 형태의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의 경우 대부업을 등록하여 대출사업을 진행 중임
 - 대부업 등록은 은행, 상호저축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에 사회적금융중개기관들이 대부분 대부업 형태로 사업을 운영중임
- (주)한국사회혁신금융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사회적금융기관으로 융자, 컨설팅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 주식회사 형태이다보니 대부업으로 등록하여 융자를 진행하고 있음
- 그 외 소액대출기관으로 (주)희망만드는사람들의 경우에도 B corp 인증을 받았을 정도로 사회적 가치추구를 인정받았으나, 주식회사 형태로 대부업을 등록하여 융자를 진행하고 있음¹³⁾
- (주)비플러스는 초기 여신 자회사 (주)비플러스 소셜대부를 P2P연계 대부업으로 등록하여 사회적기업 등에 투·융자를 진행하였으나, 현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자격요건을 갖춰 두 회사를 합병함

13) 세계일보, "희만사 김희철 대표 "서민금융 인식 바뀌어야"", 2014.07.31.,
 (<<https://www.segye.com/newsView/20140731004283?OutUrl=naver>>)

1-3 비영리법인 형태의 사회적금융기관

1-3-1 비영리법인의 소액신용대출사업

- 다양한 비영리법인들이 소액신용대출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2에 따라 금융소외계층에 대해 소액신용대출사업이 가능함.¹⁴⁾ 따라서 대출 관련 별도의 인허가, 등록이 필요 없음
- 소액신용대출사업을 진행하는 비영리법인들의 경우 보건복지부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받아 운영 중임. 이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공동체 등에게 실시되는 정부차원의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임
- 소액신용대출사업기관들은 단순히 소액대출을 넘어 사전·사후 창업 지원 혜택까지 제공함

① 사회연대은행(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

- 사회연대은행은 사회적 자본을 조성하여 사회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혁신기업가 또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투·융자하고 있음¹⁵⁾
- 단순히 개인에 대한 금융이 아닌 기업들을 위한 금융 지원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경제기금 지원이 있으며, 사회

14) 법인세법 시행규칙[시행 및 일부개정 2022. 3. 18.] [기획재정부령 제896호]
제2조의2(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 ① 영 제3조제1항제1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소외계층”이라 한다)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이 조에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연체·부도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자
4.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자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용조회회사가 산정한 신용등급(이하 이 조에서 “신용등급”이라 한다)이 하위 5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원대상자
② 영 제3조제1항제1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과 영 제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금융소외계층에 대출할 것
2. 담보나 보증을 설정하지 아니할 것. 다만, 금융소외계층이 지원받은 대출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부담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1인에 대한 총대출금액이 1억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출상한금액 이하일 것
4. 대출금리는 신용등급이 가장 낮은 금융소외계층에 대하여 적용되는 이자율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의 4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금리 이하일 것
5. 대출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전액 고유목적사업에 활용할 것

15) 사회연대은행 홈페이지, <<http://www.bss.or.kr/>>

적경제조직의 제품과 서비스를 알리는 등 성장 지원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모금도 지원하고 있음

- 개인들을 위한 금융지원으로는 자립의지는 있으나 저신용, 담보부족 등의 이유로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저리 자금 대출을 통해 경제활동 및 자립을 지원하는 마이크로크레딧, 일시적 운영비, 생계비, 의료비 등 긴급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긴급자금 대출이 있으며, 그 외 청년들을 위한 주거자금대출 및 전환대출이 있음

② 사단법인 한국 마이크로크레딧 신나는조합

- 외환위기 이후 늘어난 금융 소외계층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최초로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 한국지부로 그라민은행과 대출금 50,000달러를 계약하면서 시작됨¹⁶⁾
- 이후 고용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위탁, 보건복지부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지원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08년 본격적으로 서울시, 소상공인진흥원, 한국토지공사, 한국은행 등의 사회가치 사업을 운영함

1-3-2 비영리법인의 임팩트투자

- 소액신용대출사업 외에도 사회적 가치 기업 및 사업에 투·융자를 진행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재단법인 한국사회투자가 있음
- 한국사회투자는 UN SDGs를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 또는 사업을 발굴하여 투·융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사업 조직을 대상으로 경영 컨설팅, 투자, 액셀러레이팅을 진행하고 있음
- 2012년 12월에 설립되어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액셀러레이터로 서울·경상·전라·제주에 지부를 가지고 있음¹⁷⁾
- 소액대출기관과는 달리 임팩트투자기관으로 기업 위주의 투·융자를 진행하고 있음
 - 2021년 12월 말 기준 누적 투·융자금액이 643억 원, 누적 지원기업 수가 214개, 글로벌 진출 지원기업 수가 14개에 달함¹⁸⁾

16) 신나는조합 홈페이지, <<http://www.joyfulunion.or.kr/>>

17) 한국사회투자 홈페이지 <<http://www.social-investment.kr/sub01/foundation.php>>, 한국사회투자, 한국사회투자 기관소개서, 2022.03.16., 9면.

18) 한국사회투자, 한국사회투자 기관소개서, 2022.03.16., 5면.

1-3-3 사회적협동조합의 소액대출

- 비영리법인 중에는 「협동조합기본법」제94조(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원을 대상으로 소규모 소액대출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음¹⁹⁾
- 청년연대은행 토닥은 협동조합형태로 청년들이 협동을 통해 현실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자립과 구체적인 꿈을 실현해가는 청년금융생활네트워크임²⁰⁾
 - 조합원들이 매달 납부하는 출자금(최소 10,000원)을 모아 조성한 기금으로 기금사용이 필요한 조합원들에게 자유회자를 받고 소액대출을 진행함
- 키다리은행은 대학 내 자조금융으로 소액대출(최대 30만원)을 시행하며, 조합비도 가입 시 1회만 내거나 매월 1천원으로 낮은 수준으로 운영함
 - 대학가를 중심으로 2015~2016년 사이 6곳까지 늘었으나 현재 활동 중인 곳은 1곳으로 구성원들이 취업을 준비하거나 졸업하면서 활력이 떨어지고 운영진 재생산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부분 활동이 중단됨
- 희년은행은 종교(교회)를 기준으로 시작되어 고금리부채로 고통 받는 청년들에게 재무 상담 및 교육과 무이자 전환대출을 지원하고 있음²¹⁾
 - 협동조합의 형태로 기본조합원(개인)과 단체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본조합원은 저축금액에 따라 무이자대출이 가능함
 - 고금리, 중금리 전환대출 상품, 주거지원대출, 기본조합원 대출, 긴급생활비지원 대출, 목적대출이 운영 중에 있음

1-4 사회적은행 설립을 위한 움직임

- 초기 국내에 사회적금융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이전 사회적은행 설립을 위해 특별법 제정 등 논의가 있었으나 이 부분이 현실화되지 못함
 - 국회에서 2007년 「서민은행법안」(심상정의원 대표발의)과 「사회책임연대은행법안」(박재완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된 바 있는데, 두 법안은 별도의 은행을 설립하여 금융 취약

19) 협동조합 기본법[시행 2021. 1. 5.] [법률 제17818호, 2021. 1. 5., 일부개정]
 제94조(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제93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4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호복리 증진을 위하여 주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입 출자금 총액의 한도에서 소액대출과 상호부조를 할 수 있다. 다만, 소액대출은 납입 출자금 총액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 1. 21.>
 ② 제1항의 사업에 따른 소액대출 이자율, 대출한도, 상호부조의 범위, 상호부조금, 상호부조계약 및 상호부조회비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 청년연대은행토닥 홈페이지, <<http://www.todakbank.org/>>

21) 희년은행 홈페이지, <<https://jubileetogether.tistory.com/>>

대상자들에게 대출을 지원하고자 함

- 최근에는 「은행법」상 사회적은행 설립이 어렵다보니 신용협동조합의 형태로 여수신이 가능한 사회적신협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음

① 사회연대신협

- 사회연대신협은 사회적 경제기업이 일반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어려움에 따라 사회적 경제에 특화된 상호금융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여 설립 논의가 시작됨
-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의 네트워크 조직인 ‘사단법인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사회적경제연대회의’라 한다)가 주축이 되어 사회적경제연대회의를 공동 유대 범위로 하는 단체신협을 설립하고자 함
 - 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사회적 경제조직간 협동과 연대를 통해 사회적 경제 확대와 업종, 지역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2012년에 설립된 단체임
 - 사회적경제의 부문·지역·업종협의회를 아우르는 2차 연합체로서 사회적경제조직 지역 연합체 9개, 업종 연합체 36개, 유형 연합 8개 등 전국적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음²²⁾
- 사회연대신협 설립을 위해 단체신협 설립에 대해 사전 연구하고 전문가들과의 인터뷰 후 사회연대신협 이사회를 발족하고 설립인가 타당성을 검토함²³⁾
 - 2021년 7월 창립총회가 진행됨
 - 초기 여러 신협들도 함께 사회연대신협에 참여하고자 하였으나, 신협이 다른 신협의 조합원이 될 수 없음에 따라 사회경제연대회의 회원들 중 신협이 아닌 회원들만을 기준으로 창립총회를 진행함
- 현재 창립총회까지 마쳤으나, 신협중앙회 및 금융당국의 우려 등으로 재논의하여 추진할 예정임²⁴⁾
 - 금융감독원에서는 대손율, 위험 관리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금융당국에서는 수신대상이 무분별하게 확대될 것을 우려함²⁵⁾

22) 지역연합체(ex.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경남사회적경제협의회, 대구사회적경제가치연대 등), 업종별 연합체(ex. 한국 YMCA전국연맹, 사회연대은행함께만드는세상, 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연합회 등), 유형 연합체(ex. 전국협동조합협의회, 두레생협연합회, 한살림연합 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 등) 등이 있음. (사회연대신협 홈페이지, <<http://ksencu.ksifinance.com/index.php/home/>>)

23)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총회, “사회연대신협(가칭) 설립 검토”, 2021.3.31., 3면.

24) 사회연대신협, “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논의”, 2021.08.10.

25) 라이프인, “함께 그리고 직접 만든다, 사회연대신협은 무엇이 특별할까”, 2021.10.13.,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3165>>

■ 신탁중앙회는 창립총회 이후 사회연대신탁의 공동유대범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발송함

- 신탁중앙회와 함께 단체신탁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나 공동유대 범위와 관련하여 논쟁이 지속되고 있음
- 신탁중앙회는 공동유대 범위를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회원 및 회원에 소속된 법인·단체로만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회적경제연대회의의 입장은 이에 더하여 회원 및 회원에 소속된 법인·단체의 종사자까지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② 청년신탁추진위원회

■ 청년신탁추진위원회의 경우 청년신탁을 만들고자 하고 있는데 관련하여 신탁법 개정을 통해 특수목적형태의 신용협동조합을 만들려고 노력중임

- 이에 따라 2021년 2월 장경태의원의 대표발의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제출된 바 있음
- 법안에 따르면 신용협동조합 설립 단위인 공동유대의 범위에 금융 소외계층 지원과 사회적 가치 실현 등 특수목적을 추가하도록 제안함²⁶⁾
- 정무위원회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개정안의 특수목적 개념이 넓게 해석되어 공동체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언급함²⁷⁾

■ 그러나 2022년 2월 특수목적형태의 신탁 설립을 위한 법 개정의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추진위원회의 활동방향을 고민 중에 있음²⁸⁾

2. 해외 사회적은행 현황과 사례

2-1 해외 사회적은행의 특징

■ 해외는 세계적 금융위기와 기후비상사태, 불평등 심화 등 많은 사회문제에 직면하면서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은행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음

- 특히 세계적 금융위기 시기 사회적 은행은 기존 은행과 달리 자산을 2배 이상 상승시키고, 주요 경영지표를 20% 이상 상승시켜 지속가능한 금융기관으로 주목받음²⁹⁾

26)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8281호, 2021.02.24.
 27)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제386회 국회 제1차 정무위원회, 2021.4. 4면.
 28) 청년신탁추진위원회 홈페이지, <<https://ycus2020.tistory.com/166>>
 29) Global Alliance for Banking on Values, Strong Straightforward and Sustainable Banking Full Report, Mar.2012, p.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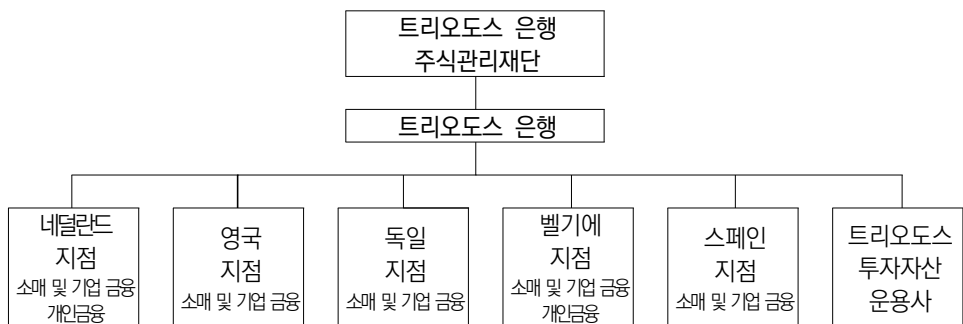
- 해외의 사회적은행들은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자산규모에 상관없이 성장하고 있으며 금융 위기 등에 영향을 받지 않음
- 사회적은행은 국내와 달리 해외에서는 각 국가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고 있음
- 일반은행 형태인 네덜란드 트리오도스(Triodos)은행, 협동조합은행 형태인 독일 GLS 은행, 신용협동조합 형태인 캐나다 밴시티(Vancity) 신탁, 특별법령상의 은행인 방글라 데시 그라민(Grameen)은행을 통해 각 은행별 지배구조와 운영원칙을 살펴봄

2-2 일반은행 형태(네덜란드 트리오도스 은행)

2-2-1 개요

- 대표적인 사회적은행 중 하나로 가장 크게 사업범위를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본사는 네덜란드 자이스트(Zeist)에 있으며 벨기에(Brussels), 영국(Bristol), 스페인(Madrid), 독일(Frankfurt)에 지점을 두고 영업 중임
 - 1980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1993년 벨기에, 1995년 영국, 2004년 스페인, 2006년 독일에 추가지점을 설립하여 유럽계 은행이 됨
 - 본래 2013년에 프랑스(Paris)까지 지점이 설립되며 총 6개국에 지점을 두고 영업 중이었으나 저금리 환경이 지속되면서 2019년 12월 프랑스 지점 운영을 중지하기로 발표하였고³⁰⁾ 2021년 12월에 폐쇄함³¹⁾. 현재는 5개국에 지점이 운영 중임

〈표 2〉 트리오도스 은행그룹 구조



출처 : Triodos Bank 홈페이지,

<https://www.annual-report-triodos.com/2021/our-group/triodos-bank-group-structure-2021>

30) Triodos Bank 홈페이지,

<https://www.triodos.com/en/press-releases/2019/triodos-bank-changes-ambition-for-france>

31) Triodos Bank, Annual Report 2021, Mar. 2022, p.50.

- 사람(people), 환경(planet), 번영(prosperity)을 고려하는 3P 운영원칙을 준수하고 있는데, 트리오도스 은행 이름 자체도 고대 그리스어로 'Tri hodos'는 'three-way'를 의미함
- 트리오도스 은행은 환경, 문화, 사회라는 3가지 중요한 주제에 걸쳐 활동에 집중하고 있음

〈표 3〉 트리오도스 은행의 주요 사업

주제	내용
환경	트리오도스 은행은 에너지 수요를 줄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해 재생가능 에너지 시스템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음 (예: 유기농, 재생에너지, 생태개발, 유기농식품, 환경기술 등)
문화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기술 및 지식 개발을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함 (예: 종교적 철학 지원, 여가활동 지원, 보육시설 지원, 교육 및 예술·문화 지원 등)
사회	자선단체, 사회적기업 및 가치기반 사업을 지원함 (예 : 비영리기업의 고용 지원, 청소년 지원센터 대출 지원, 지속가능한 중소기업의 자금 지원, 소액금융, 주택조합, 공정무역, 지속가능한 생산사업, 보건 의료 지원 등)

출처 : Triodos Bank 홈페이지, <<https://www.triodos.co.uk/about-us>>, <<https://www.triodos.co.uk/sectors-we-finance>>

- 트리오도스 은행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사명으로 가짐. 지속가능한 금융상품을 통해 개인과 조직의 돈이 사람과 환경에 유익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지속가능성, 투명성, 우수성, 기업가정신을 은행의 핵심가치로 가짐³²⁾

〈표 4〉 트리오도스 은행의 핵심가치

핵심가치	내용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사람, 환경, 문화에 중점을 둔 기업에만 자금을 지원함
투명성(Transparency)	예금자의 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투명하게 공개함
우수성(Excellence)	은행으로서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최고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함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지속가능한 기업가, 기업, 정책 등에 자금을 지원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함

출처 : Triodos Bank 홈페이지, <<https://www.triodos.co.uk/about-us>>

- 2009년에는 세계적 사회적은행 연합체(Global Alliance for Banking on Values, 이하 'GABV'라 함)를 설립하여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금융을 실현하기 위한 연합체를

32) Triodos Bank 홈페이지, <<https://www.triodos.co.uk/about-us>>

구성함

2-2-2 설립 자본금 및 지배구조

- 트리오도스 은행은 자본금 54만 유로로 중앙은행으로부터 은행업(full banking license) 인가를 받아 설립됨
 - 금융감독청의 감독 하에 운영되고 있는 일반은행의 형태임
 - 트리오도스 은행의 성장에 따라 네덜란드는 2014년 「은행법」(Banking Code)을 개정하여 네덜란드 인가를 받은 모든 은행이 국민의 신뢰와 지역사회에 기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설립 당시 44,000명 이상의 투자 고객에게 예탁증서(Depository Receipts)를 발행하여,³³⁾ 주식회사 형태의 독립된 법인으로 시작함
- 트리오도스 은행은 주식관리재단(Foundation for the Administration of Triodos Bank Shares; SAAT)이 트리오도스 은행의 모든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³⁴⁾
 - 트리오도스 은행 주식에 대한 예탁증서를 개인과 기관에 발행함
 - 주식관리재단은 트리오도스 은행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재단은 은행의 윤리적 목표와 임무, 경영이익 및 예탁증서 보유자의 이익에 따라 결정함
 -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 거래소상장 없이 은행을 운영하고 있음
- 예탁증서 소지자는 총회의 투표권을 가지며, 1인당 최대 1,000표로 제한되고 있음. 예탁증서 소지자는 전체 예탁증서의 10% 이상을 소유할 수 없으며, 총회에서 예탁증서 소지자는 이사회의 지명을 기초로 주식관리재단 이사를 임명하고 있음
- 트리오도스 은행은 이사회와 감독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이사회는 트리오도스 은행에 전반적인 경영과 전략적 개발에 대한 책임을 가짐. 감독위원회는 이사회의 활동과 결정, 회사 및 계열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것을 업무로 하며, 이사회의 이사를 임명할 수 있음³⁵⁾
 - 감독위원회 위원은 감독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총회에서 임명함. 강화된 추천권에 따라 네덜란드 노사위원회는 감독위원회 위원으로 감독위원의 3분의 1을 추천할 수 있음
- 같은 가치를 지향하는 고객들이 직접 투자하고 이를 주식관리재단이 관리함으로써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에 기여하는 기업에 자금이 지원 가능함

33) Triodos Bank 홈페이지.

<https://www.triodos.com/articles/2020/triodos-timeline-our-most-important-milestones>

34) Triodos Bank, Annual Report 2021, Mar. 2022, p.114

35) Triodos Bank, Annual Report 2021, Mar. 2022, p.10, p.114.

2-2-3 사회적 가치 추구에 따른 2021년 주요 재무성과³⁶⁾

- 사회적은행은 사람과 환경을 우선시하며 실물경제에 투자하고 있는데, 2021년 실물 경제자산의 비율을 70%(2020년 75%)로 유지하였음. 또한 시장의 혼란에 대비해 유동성 확보를 위해 예금 대비 대출 비율을 75~85%로 유지하고 있음(2021년에는 77%에 달함)
- 트리오도스 은행은 GABV가 개발한 평가표에 따라 투자를 모니터링하고 투자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며, 전체 자산의 70%(2020년 74%)를 재무적 수익과 동시에 사회적, 환경적 이익을 창출하는 곳에 투자하고 있음
- 트리오도스 은행은 2021년 11월 첫 녹색채권을 발행하였는데, 이 채권은 재생 에너지, 녹색 건물, 생활 천연자원 및 토지사용의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곳에 사용됨
- COVID-19 영향에도 불구하고 트리오도스 은행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2021년에 상당한 성장을 기록함³⁷⁾
 - 총 자산은 3,916만 유로(19%) 증가하여 242억 유로로 증가하였으며, 은행의 충성 고객 기반 역시 2021년 747,413명으로 2020년(728,056명)에 비해 증가함
 - 2021년 세후 순이익은 5,080만 유로로 2020년 2,720만 유로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자본수익률은 2021년 4.1%로 2020년(2.3%)에 비해 증가함

2-2-4 대출 및 투자 포트폴리오

- 트리오도스 은행은 지속가능한 경제에 기반한 대출 및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 잠재적 대출 기업들의 부가가치에 대해 평가하고 있음.³⁸⁾ 이는 일반은행이 주주에 대한 수익 극대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위험과 수익을 보고 사회 및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것과는 대비됨
 - 예상 대출의 상업적 타당성은 지속가능한 경제에 기여하는지 여부가 판단된 뒤 평가되는데, 트리오도스 은행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위험과 수익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 환경 및 문화적 영향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춤
- 트리오도스 은행의 대출 프로세스는 일반 영리은행과 달리 재무적인 부분과 함께 지속 가능성 및 사회, 환경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주는지 평가함³⁹⁾

36) Triodos Bank, Annual Report 2021, Mar. 2022, p.47.

37) Triodos Bank, Annual Report 2021, Mar. 2022, p.21.

38) Triodos Bank, Annual Report 2021, Mar. 2022, p.58.

39) 박희원, "해외 사회적 은행 사례 분석 : 트리오도스 은행", Weekly KDB Report, KDB 산업은행, 2017.09.25., 24면.

- (1단계) 사업이 지속가능한 분야인지 판별하고, (2단계) 재무적 수익과 동시에 사회·문화·환경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창출하는 사업을 선별함. 이후 (3단계) 대출고객의 대출금 사용 용도를 자세히 검토하고, (4단계) 선별된 프로젝트가 은행의 지속가능성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 자금을 지원함
- 재생에너지, 유기농업, 생태발전 등 자연 및 환경과 문화 및 사회, 사회적 기업 등에 대출을 하며, 도박, 무기산업 등 환경 위협적인 사업에는 대출을 제한함
- 트리오도스 은행은 2021년 환경 분야에 27%, 사회 분야에 21%, 문화 분야에 8%, 주거 분야에 24%, 지방자치단체에 1%, 임팩트 주식 및 채권에 19%를 투자하였음⁴⁰⁾
 - 환경 분야의 경우 에너지와 기후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에너지 절약사업에 투자하며, 지속가능한 식량 및 농업을 위해 유기농업 사업을 지원함
 - 사회 분야로는 사회주택 및 사회적 목표를 가진 기업 및 비영리 조직 등에 투자함. 노인돌봄이나 공정무역 사업 등 그 범위는 다양함
 - 문화 분야는 교육, 수련회, 종교, 문화센터 등 예술가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음
 - 임팩트 주식 및 채권의 경우 트리오도스 투자자산운용사에 의해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주도하는 기업과 기관, 사업에 직접 투자함

2-3 협동조합은행 형태(독일 GLS 은행)

2-3-1 개요

- GLS 은행은 1974년 ‘대출과 나눔을 위한 공동체은행’(Gemeinschaftsbank für Leihen und Schenken)의 머리글자 ‘GLS’를 가져와 신용협동조합으로 설립됨
- GLS 은행은 2021년 기준 독일에서 770개 협동조합은행 중 13번째로 큰 협동조합은행이며, 협동조합은행 중 시장점유율이 0.86%에 해당함⁴¹⁾
- 독일 「증권거래법」(Wertpapierhandelsgesetz: WpHG)상의 정보공개를 넘어 사회·환경적 기준에 대한 평가를 공개하고 있음.⁴²⁾ 이에 따라 2022년 Fair Finance Guide에서 투명한 정보공개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독일의 지속가능성상(Deutschen Nachhaltigkeitspreis), 올해의 은행상(Bank des Jahres 2022)을 13회 연속 수상하고 있음⁴³⁾

40) Triodos Bank, Annual Report 2021, Mar. 2022, p.59.

41) TheBanks.eu 홈페이지, <<https://thebanks.eu/banks/11304>>

42) GLS은행 홈페이지, <<https://www.gls.de/privatkunden/gls-bank/zahlen-fakten/>>

43) GLS은행 홈페이지, <<https://www.gls.de/privatkunden/gls-bank/auszeichnungen/>>

2-3-2 설립 자본금 및 지배구조

- 5억 마르크 자본금으로 설립된 독일 「협동조합법」(Genossenschaftsrecht) 상의 협동조합이면서 독일 「은행법」(Gesetz über das Kreditwesen) 상 연방금융감독청의 인가를 얻어 은행업을 영위하는 협동조합은행임
- 협동조합이지만 1974년 독일 「은행법」 개정으로 비조합원까지 금융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음. 국내의 경우 「협동조합기본법」상 금융, 보험업 영위를 금지하여 협동조합형태의 은행은 존재하지 않으며, 신용협동조합법상의 신탁만 존재가 가능함
- GLS은행은 경영이사회와 감독위원회로 구분되어있음
 - 경영이사회는 분기별로 감독위원회에 보고하며, 감독위원회는 이사회 임명 및 해임 등 경영이사회를 감시함.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명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3명은 근로자 이사를 두고 있음
- 조합원의 경우 최소 1주 출자금이 100유로에 해당하며 법인회원은 최소 25주의 출자가 필요함
- GLS 투자위원회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으로 외부 6명, 내부 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외부전문가는 지속가능성 전문가, 프로젝트 컨설턴트, 환경보호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있음⁴⁴⁾
 - 어떤 투자 제안이 GLS 은행의 대출 및 투자 원칙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결정하고 있음. GLS 연구(GLS Research)의 광범위한 분석을 기초로 검증 단계를 통과한 대상에만 대출이나 투자를 진행함

2-3-3 사회적 가치 추구에 따른 2021년 주요 재무성과

- 사회 및 보건 분야와 관련하여 2021년 요양시설에 730개의 추가공간과 장애인을 위한 166개의 추가 주거 공간, 간호사의 92%가 정당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는 등의 사업을 달성함⁴⁵⁾
- 교육 및 문화 분야에서는 2,207개의 학교 및 유치원에 재정을 지원하였으며, 건강 분야에서는 유기농 농지 사업 및 지속가능한 경제를 실천하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
-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사업 및 광전지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는데, 2021년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98,200톤의 CO₂를 저감함

44) GLS 은행 홈페이지,

<https://www.gls.de/privatkunden/gls-bank/gls-nachhaltigkeit/gls-anlage-und-finanzierungskriterien/>

45) GLS은행 홈페이지, <https://www.gls.de/privatkunden/warum-gls-bank/gls-nachhaltigkeit/>

2-3-4 대출 및 투자 포트폴리오

- GLS 투자 및 자금 조달 원칙으로 사회·환경적 기준을 평가하여 공개하고 대출과 투자 심사를 엄격하게 규정하여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는 투자하지 않음
 - GLS 은행은 재생에너지, 유기농업, 남녀평등, 난민 등 UN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를 기반으로 사회적, 환경적 요인을 평가하여 투자 및 자금조달하고 있음.⁴⁶⁾ 사형과 고문 등 인권을 위반하거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의 증권에는 투자하지 않음⁴⁷⁾
 - GLS 은행은 원칙적으로 인권 및 노동권 침해, 원자력, 석탄에너지, 무기, 살생물제(살충제), 유전자 변형 농업, 동물실험 등 기준을 위반한 기업 또는 사업에는 자금을 조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⁴⁸⁾

〈표 5〉 GLS 은행의 투자 기준

투자영역	내용	
미래지향적인 사회-생태 사업 영역	재생에너지	- 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설비를 설계, 생산, 운영하는 회사에 자금 지원
	유기농업 및 입업, 식품	- 살충제, 유전자 변형 유기체, 대량 가축 사육, 산업 육류 가공 금지 - 생물다양성과 연령 보존
	지속가능한 주택	- 건강한 건축자재 및 에너지 효율 건물 투자
	교육 및 문화	- 교육시스템 다양성 촉진을 위한 교육기관과의 협력 - 문화 및 예술 사업 지원
	사회보건	- 요양원, 장애인 기관, 정신질환자 병원 등 건강증진기관 지원 - 대체치료법 지원 및 일반의약품 제조 지원
	금융서비스 및 소액금융	- 지속가능 및 지역적인 사업방향을 가진 은행 지원 - 금융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금융 기회 제공
	이동성	- 환경 친화적이고 자원 효율적인 방법의 이동 시스템 지원
	지속가능한 경제	- 지속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사회-생태 사업 발굴 및 지원
지속가능한 기업지배구조	기업의 정책	- 독립된 감독 및 감사위원회 - 이사회 보상공개 -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생태학적 표준 고려 - 노동권 및 인권에 대한 존중 - 협력업체 및 고객과의 장기적이고 공정한 협력 - 지속가능한 보고서 및 정기적인 보고 - 이해관계자 간 지속적인 논의 및 투명한 처리

46) GLS Bank, Anlage-und Finanzierungsgrundsätze, Jan. 2017, p.3.

47) Ibid.

48) GLS Bank, Anlage-und Finanzierungsgrundsätze, Jan. 2017, p.3-4.

사회적 책임	직원과 사회의 요구에 따라 기업의 활동을 일관되게 조정 - 근무조건 보장 및 적절한 급여 - 직원의 참여 보장 - 직원의 자유 및 건강 증진 지원, - 광범위한 교육제공 - 기업의 평등 및 다양성 촉진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보존에 기여 - 비재생 천연자원의 소비 감소 - 유해한 배출물 및 온실가스 최소화 -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 활용
국제 경제관계 불균형 개선	- 개발도상국 및 신흥국에서의 적절한 임금 지급 - 지역 직원 채용 - 지역 이익 재투자 - 생산자에게 합리적인 가격 지불
제품에 대한 책임	- 서비스 수명 연장, 수리 및 재활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 사회적,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하는 제품 및 서비스 - 신흥 및 개발도상국의 경제 및 사회발전을 지원하는 제품 및 서비스 -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에 기여하는 제품 및 서비스

출처 : GLS Bank, Anlage-und Finanzierungsgrundsätze, Jan. 2017, p.5-7.

2-4 신용협동조합의 형태(캐나다 밴시티 신흥)

2-4-1 개요

- 밴시티는 캐나다 최대의 신용협동조합으로 54개의 지점을 두고 있으며,⁴⁹⁾ GABV에 가입한 최초의 캐나다 금융기관임⁵⁰⁾
 - GABV의 운영원칙에 따라 삼중기준(triple bottom line)인 사람, 환경, 수익으로 구분하여 연간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음⁵¹⁾
 - 캐나다 동부에 영어권의 주류 사회에 대한 프랑스어권의 강력한 연대감을 토대로 발전한 데잘댕에 비해 서부에 기반한 밴시티는 영어권의 주류 사회에서도 성공한 주류 신흥임⁵²⁾

49) Vancity 홈페이지, <https://www.vancity.com/AboutVancity/VisionAndValues/Glance/?xcid=hp_about_pod_vancityataglance>

50) Vancity 홈페이지, <<https://www.vancity.com/AboutVancity/VisionAndValues/ValuesBasedBanking/GlobalAllianceBankingValues/>>

51) GABV는 삼중기준을 사람, 환경, 번영인 3P(people, planet, prosperity) 원칙으로 두고 있어 밴시티의 수익(profit)과는 차이가 있으나 동일하게 본다.

52) 김선민, “협동조합 금융지원 해외사례 연구”,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2017.1.

- 밴시티는 56만 명 이상의 회원이 소유하고 1인 1표를 기반으로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금융협동조합임⁵³⁾
- 밴시티는 2021년 4월 Net-Zero Banking Alliance에 가입한 최초의 캐나다 금융기관으로 2040년까지 모든 대출 및 투자포트폴리오에 탄소배출량을 '0'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⁵⁴⁾
- 소매 및 기업금융(예금취급 및 대출), 상업용 모기지 대출, 투자 조언 및 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자회사로는 밴시티 투자자산운용사(Vancity Investment Management Ltd.; VICIM)와 밴시티 지역투자은행(Vancity Community Investment Bank™; VCIB™)이 있음⁵⁵⁾
- 밴시티는 밴시티 투자자산운용사를 통해 UN의 책임투자원칙에 따른 책임투자를 하고 있음.⁵⁶⁾ 2021년 밴시티 투자자산운용사는 기후 위험, 직원 건강 및 안전, 환경, 생활임금, 인권, 의료 접근성 등 43개의 회사와 33개의 문제에 대해 계약을 체결함
- 밴시티는 화석연료 회사에 투자하거나 대출해주지 않음.⁵⁷⁾ 투자자금은 석유 및 가스 생산업체, 파이프라인 회사, 석탄 발전업체, 천연가스 유통회사, LNG 운영회사뿐만 아니라 화석 연료 산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함

2-4-2 설립 자본금 및 지배구조

- 밴시티는 1946년 기존 신탁들과 달리 지역사회 기반 신용협동조합으로 설립됨⁵⁸⁾
 - 기존 신탁들이 직장, 무역, 교회 또는 민족과 같은 공동 유대를 중심으로 형성되다보니 유대가 없을 경우 배제됨에 따라 신용협동조합 활동가들이 밴쿠버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개방형 신탁을 제안하였고, 14명의 밴쿠버 시민이 5달러씩 출자하여 자본금 70달러, 개방형 채권 신탁으로 시작함
- 매년 순이익의 30%를 회원과 지역사회에 환원함으로써⁵⁹⁾ 밴시티 신탁의 가치를 지키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있음

53) Vancity 홈페이지, <https://www.vancity.com/AboutVancity/VisionAndValues/CooperativeModel/?xid=about_megamenu_coop>

54) Vancity 홈페이지, <https://www.vancity.com/AboutVancity/VisionAndValues/Glance/?xid=hp_about_pod_vancityataglance>

55) Vancity, 2021 Annual Report, 2022.4, p.5.

56) Vancity, 2021 Annual Report, 2022.4, p.22.

57) Vancity, 2021 Annual Report, 2022.4, p.22.

58) Vancity 홈페이지, <<https://www.vancity.com/AboutVancity/VisionAndValues/Glance/Founding/>>

59) Vancity, 2021 Annual Report, 2022.4, p.24.

- 밴시티 이사회는 회원을 대표하며 조직 관리 및 비판적인 감독을 제공함⁶⁰⁾
 - 이사는 회원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며, 각 이사는 3개 이상의 위원회에서 근무하며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이사회에 임명될 수 있음
 - 선거 및 임명위원회는 33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감독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범위의 후보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함
- 이사회는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 기술위원회(Technology Committee), 지배구조위원회(Governance Committee), 형평성 및 인사위원회(Equity and People Committee), 선거 및 임명위원회(Nominations and Election Committee), 위험관리 위원회(Risk Committee)를 구성하고 있음⁶¹⁾
- 밴시티는 이사회 및 고위 경영진의 형평성을 위해 2025년 말까지 최소 40% 이상 유색 인종 및 성소수자, 장애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하여 지역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목표하고 있음⁶²⁾
- 현재 전체 이사 9명 중 여성 이사가 6명이며, 이사회 이사들은 임기 3년에 최대 4회까지 연임이 가능함

2-4-3 사회적 가치 추구에 따른 2021년 주요 재무성과

- 2021년 신용위험 환경의 축소 및 안정화로 신용손실이 감소하였으며,⁶³⁾ 저금리 환경으로 많은 회원들이 더 낮은 대출비용을 유지하기 위해 모기지를 재융자하면서 중도상환 수수료 수입이 일시적으로 증가함
- 2021년 밴시티의 총 자산(266억 달러)과 관리자산(66억 달러)은 305억 달러에서 332억 달러로 증가함. 이는 전년 대비 총 자산 6.8%, 관리자산 17.9% 성장함
- 밴시티는 사회적 포용, 경제적 복지 및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자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사회적금융자산⁶⁴⁾(Triple bottom line assets and assets under administration; TBLAA)으로 칭하고 있음. 사회적금융자산은 2020년 89억 달러에서 107억 달러로 상승하였으며, 현재 관리중인 모든 자산의 3분의 1을 사회적금융자산에 투자하고 있음.

60) Vancity, 2021 Annual Report, 2022.4, p.29.

61) Vancity 홈페이지,

<https://www.vancity.com/AboutVancity/GovernanceAndLeadership/BoardofDirectors/BoardCommittees/>

62) Vancity, 2021 Annual Report, 2022.4, p.30.

63) Vancity, 2021 Annual Report, 2022.4, p.24.

64) 사회적금융자산은 i) 사회적·문화적·경제적·환경적 복지 중 적어도 한 부분에 기여해야하며, ii) 복지의 다른 부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한다. 그리고 iii) 자금조달에 있어 회원에게 공정한 조건을 주어야한다(Vancity, 2021 Annual Report Glossary, 2022.4, p.12.).

2021년 전체 자산 증가의 70%가 사회적금융자산이었음⁶⁵⁾

- 2021년 밴시티는 밴시티 구매의 63%(약 8,000만 달러)를 지역기반기업에서 조달함으로써 지역소비를 장려하였으며,⁶⁶⁾ 밴시티는 452개의 비영리 단체와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통해 지역사회에 870만 달러를 재투자함⁶⁷⁾
- 밴시티는 COVID-19의 영향을 받은 중소기업과 비영리 기업을 지원함.⁶⁸⁾ COVID-19 복구 보조금으로 총 462,500달러를 지원하여 99개 소기업을 지원하였으며, 36개 비영리단체에 505,000달러를 지원함
- 밴시티는 2021년 COVID-19의 영향으로 많은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필수적이지 않은 여행에 대한 제한이 발생함에 따라 에너지 사용량, 종이 사용량, 직원 출퇴근 및 출장이 감소함에 따라 전반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함. 이에 따라 밴시티는 현재 모든 사업을 전기차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음⁶⁹⁾
-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2020년 온실가스 배출을 상쇄하기 위해 상쇄비용으로 63,910달러를 지불함⁷⁰⁾

2-4-4 대출 및 투자 포트폴리오

- 밴시티는 개인금융과 기업금융을 하면서 일반적인 대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출 및 투자를 하고 있음
 - 원주민 공동체, 협동조합, 에너지 및 환경, 사회목적의 부동산, 노동조합 및 조합원, 소기업 및 창업 대출, 사회적기업 등 우선순위를 정하여 임팩트 대출 및 투자를 하고 있음.⁷¹⁾ 기업대출의 경우 사업자금, 운영자금 대출 외에도 소규모 기업, 신생기업, 비영리단체, 녹색기업 등을 위한 전문 대출을 제공함
 - 개인대출의 경우 일반대출 외에도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주택개조 또는 탄소배출량이 적은 차량 구매 등 환경과 사회를 고려하는 경우 저리로 자금조달을 받을 수 있음.⁷²⁾ 개인투자의 경우에도 환경보호, 건전한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 투자 등 재정적 수익과 동시에 긍정적인 사회적 수익을 제공하는 사회적 책임투자가 있음⁷³⁾

65) Vancity, 2021 Annual Report, 2022.4, p.25.

66) Vancity, 2021 Annual Report, 2022.4, p.27.

67) Vancity, 2021 Annual Report, 2022.4, p.27.

68) Vancity, 2021 Annual Report, 2022.4, p.27.

69) Vancity, 2021 Annual Report, 2022.4, p.19.

70) Vancity, 2021 Annual Report, 2022.4, p.19.

71) Vancity 홈페이지,

<https://www.vancity.com/BusinessBanking/Financing/ImpactBusinessDevelopment/>

72) Vancity 홈페이지, <https://www.vancity.com/Loans/TypesOfLoans/>

- 밴시티는 정부와 협력하여 연구를 수행하거나 사업을 진행하기도 함
 - 정부가 시리아 난민에 대한 지원을 발표함에 따라 난민 지원 프로그램 및 소액대출 등 난민들에게 신용을 창출하고 임대 주택 및 정착을 위한 지원을 제공함
 - 2018년 밴시티는 새로운 임대주택 개발에 대한 금융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하여 주택혁신기금(Affordable Housing Innovation Fund)을 마련함
 - 밴시티와 밴시티 지역투자은행은 2020년 캐나다 도시연구소(Canadian Urban Institute)와 함께 COVID-19의 영향 및 다양한 기회를 발견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하여 연구를 수행함
 - 2020년 9월 밴시티는 캐나다 최초로 흑인 기업가 지원사업(Black Entrepreneurship Program)을 진행하고 있음⁷⁴⁾

2-5 특별법령에 의한 은행 형태(방글라데시 그라민은행)

2-5-1 개요

- 그라민은행(Grameen Bank)은 「Grameen Bank Ordinance」라는 특별 조례에 의해 1983년 법인화함
- 무담보소액대출 은행으로 담보능력이 없는 빈민들에게 자체 교육 및 소액신용대출을 통해 빈곤 퇴치사업에 주력, 평균 95% 이상의 회수율을 기록하며 재정자립도 100%의 은행으로 성장함
 - 그라민은행 설립 전 방글라데시 시중은행들은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빈곤층에게 금융을 제공하지 않았고, 대부업체들은 과도하게 높은 이자율을 부과하여 갈취적인 행위를 하였음
- 그라민은행은 여성의 역량강화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어 대출자의 98%가 여성임
- 그라민은행은 40개 권역사무소와 감사실, 240개의 지역사무소, 2,568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027만 명의 회원을 통해 약 4,500만 명(가족 포함)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⁷⁵⁾

73) Vancity 홈페이지, <<https://www.vancity.com/Investments/TypesofInvestments/SociallyResponsibleInvestments/>>

74) Vancity 홈페이지, <https://www.vancity.com/AboutVancity/News/MediaReleases/Black_Entrepreneurship_Sep2020/>

75) Grameen bank 홈페이지, <<https://grameenbank.org/about/introduction>>

2-5-2 설립자본금 및 지배구조

- 그라민은행은 초기 납입자본금이 7,200만 타카(taka)에 해당함(한화 약 8억 4천만원). 그라민은행은 정부가 25%, 은행고객이 75%를 소유하고 있으며⁷⁶⁾, 정부는 은행의 납입자본금을 수시로 증액할 수 있어 실제 정부 소유의 은행이라고 볼 수 있음
- 이사회는 이사는 정부가 임명하는 3명과 주주에 의해 선출되는 9명, 당연직 상무이사로 총 13명으로 구성되는데,⁷⁷⁾ 이사회 의장 역시 정부가 임명하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을 계속함. 이사가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정부의 수락이 필요함

2-5-3 대출 및 투자 포트폴리오

- 그라민은행은 소기업 대출과 청년창업대출, 농업 및 가축업을 위한 단기대출, 학자금 대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 대출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⁷⁸⁾ 대부분의 대출들이 단기상환이 많아 일반은행들의 대출상품들과 차이가 있음
 - 대출 금리는 소득창출대출 20%, 주택대출 8%, 학자금대출 5%, 무이자대출이 있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을 위한 프로그램(Struggling Members Program)을 운영하여 무일푼 회원들에게 무이자대출을 진행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회원 자녀에게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자금을 대출하고 있음

2-5-4 한계

- 그라민은행은 본래 독립적인 은행으로 출발하였지만, 방글라데시 정부와 해외 원조기관들의 기부금을 통해 기존 소액금융기관(microfinance financial institution)보다 낮은 이자율을 부과할 수 있었음. 이에 따라 실제 수년간 손실을 입었으나 거액의 기부금에 의해 과소평가됨⁷⁹⁾
- 또한 정부가 일부 출자하게 되면서 정부 통제가 존재하게 되었는데, 정부 통제가 강해지며 설립자 무하마드 유누스가 은행장에서 해임됨
- 그라민은행은 마을주민의 연대와 상호부조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실제 사회적은행으로 보기는 어려움. 개인 단독대출이 아닌 소규모 그룹 단위로 대출이 진행되며, 상위 조직

76) Grameen Bank Ordinance 1983 (7)

77) Grameen Bank Ordinance 1983 (9)

78) Grameenbank 홈페이지, <<https://grameenbank.org/loan/all>>

79) Nimal A. Fernando, Understanding and Dealing with High Interest Rates on Microcredit-A Note to Policy Makers in the Asia and Pacific Region-, Asian Development Bank, May 2006, 3-4면.

이 하위 점조직을 관리하는 피라미드 형태로 운영됨. 인적담보를 통해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였으나, 대출 미상환시 강제절차 또는 연대책임은 없음

- 1인 대출한도를 150달러 수준의 소액으로 제한하여 은행 부실화 위험을 낮추고 높은 금리를 통한 상환 수익으로 은행의 상환 불능 리스크를 축소함. 그러나 그라민은행의 연이자율은 국제기준금리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임
- 그라민은행은 공개하고 있는 상환율과 달리 실제로는 연체가 증가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의견도 있음.⁸⁰⁾ 또한 다른 마이크로크레딧 기관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여러 기관의 중복대출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대출상환능력이 없는 대출자들의 부채가 증가함⁸¹⁾
- 그라민은행은 사회적은행이라기 보다는 정부출자의 소액대출기관으로 정부 통제에 의한 은행이다보니 다른 해외 사회적은행에 비해 사업영역이 광범위하지 못함
- 다만 사회적은행은 아니지만 특별법령에 의해 법인화되었다는 점에서 참고할 수 있음

3. 제주지역 사회적금융 현황

3-1 제주 중소기업 현황 및 금융 지원 현황

3-1-1 제주 중소기업 현황

- 제주 지역에는 6만개가 넘는 많은 중소기업이 있고⁸²⁾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주 업종이 규모가 영세한 도소매와 음식업에 집중되어 기업의 성장에 따른 고용의 증가, 도내 경제적 가치 증가 등에는 한계가 있음. 도에서도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책과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집중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됨
- 2019년 조사(통계청 2019년 사업체 조사)⁸³⁾결과 제주 지역의 중소기업 사업체 수는 전년도 대비 약 5.1% 증가한 66,098개로 확인됨. 또한 중소기업에서 고용하고 있는 종사자 수는 전년도 대비 3.4% 증가한 286,304명으로 점차 증가함을 알 수 있음

80) Moreno, Ana Maria, "Grameen Microfinance: An Evaluation of the Successes and Limitations of the Grameen Bank", Honors Theses (PPE), 2010, p.20.

81) Moreno, Ana Maria, "Grameen Microfinance: An Evaluation of the Successes and Limitations of the Grameen Bank", Honors Theses (PPE), 2010, p.30.

82) 통계청, 사업체조사, 2019.

83) 통계청, 사업체조사, 2019.

- 제주지역 중소기업의 업종별 분석에서는 특히 도소매(23.1%)와 음식업(30.0%) 이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문화,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업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제조업(4.0%)이나 과학기술 서비스업(2.1%), 정보통신업(0.5%) 등 미래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은 거의 미미한 수준이며 중소기업의 질적인 수준이 양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판단됨
- 기업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기업의 조직 형태로는 전체 대상 기업의 약 82%가 개인 사업법인으로 주식회사(10.6%) 등 법인 사업자 비율이 매우 낮아 사업의 규모가 영세하고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매우 취약함을 알 수 있음
- 중소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종사자 수는 4인 이하의 비율이 약 81.9%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100인 이상의 회사는 0.3%에 불과하여 고용 측면에서도 영세성과 함께 고용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파악됨
- 한편 대표자의 연령대는 50세 이상이 53.6%를 차지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창업자의 나이가 많아서 사업의 확대와 성장에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고 판단됨. 좀 더 청년에 의한 창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도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2023년 1월 조사한 자료⁸⁴⁾에 따르면 24개가 코스닥과 코넥스 상장을 희망하였고, 11개 사는 전기차/모빌리티 기업이며, 5개는 식품/바이오, 2개는 관광업체로 파악됨. 이는 도내 신산업 기업들의 성장에 대한 욕구가 크고 이를 위한 지원이 신속이 이루어져야 함을 나타내고 있음

3-1-2 중소기업 지원 금융 현황⁸⁵⁾ (중소기업 지원 금융액 881억 원 중 금융 지원 약 476억 원 규모)

- 제주 중소기업수는 66,098개(2019년)⁸⁶⁾ 이나 2022년도 공급된 자금은 은행권 여신으로 2.5조 원이 공급되었고, 중소기업 지원금융은 476억 원⁸⁷⁾에 불과하여 중소기업 수와 이에따른 자금 수요인 년 6~10조로 추산되는 자금 수요에 비해서 자금 공급 수준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으로 판단됨
- 2023년 1월 조사⁸⁸⁾된 제주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조사에 따르면 2023년 중소기업 자금 수요조사에 따르면 도내 중소기업 40.0%는 자금사정이 곤란하다고 응답함. 자

84) 제주상장기업온라인수요조사, 2023.1, 제주도경제정책과

85) 제주특별자치도, 2022 중소기업육성시책, 2022.

86) 통계청, 사업체조사, 2019.

87) 제주특별자치도, 2022 중소기업육성시책, 2022.

88) 2023년 중소기업 설 자금 수요조사, 뉴제주일보(<http://www.jejuilbo.net>) 및 중소기업중앙회 제주본부

금사정이 곤란한 원인으로는 판매부진(87.5%), 원부자재 가격상승(62.5%) 등이 가장 높았음. 특히 기업의 35.0%는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차입이 곤란하다고 응답했고, 은행 차입이 원활하다고 응답한 업체는 겨우 5.0%에 불과함

-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이 곤란한 주요 원인으로는 '고금리'가 54.1%로 가장 많이 꼽혔으며 대출한도 부족 27.0% 부동산 담보부족 18.9% 재무제표 위주심사 13.5% 등의 순으로 응답함⁸⁹⁾
- 2022년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 금융은 약 476억 원으로 파악됨. 하지만 지원되는 금융의 대부분이 보증에 기반한 대출과 지원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원규모가 크지 않음. 보증의 경우 보증재단에 의한 보증과 보증기급에 의한 보증으로 보증에 따라 은행 대출이 연계되고 있음. 지원금은 도 추천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으로 사실상 직접 지원금인 비금융 지원금 405억 원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됨
-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이자보전금 지원), 창업두드림 제주신용보증재단 특별보증 출연, 골목상권살리기 제주신용보증재단 특별보증 출연, 위생시설개선자금 융자, 관광진흥기금 융자이자 차액 지원 등의 프로그램으로 각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요약함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자보전금 지원)
 - 내용 : 자금별 융자추천액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차액(1.7~2.8%) 보전
 - 절차 : 융자 추천(도경제통상진흥원) ⇨ 대출 (도내 16개 금융기관) ⇨ 이자차액보전 (도중기 육성자금)
 - 지원규모 : 313억 원 (업종별 각 사 5억 원 미만)
- 창업두드림 제주신용보증재단 특별보증 출연
 - 내용 : 경영안정화자금 대출 실행에 따른 보증서 발급
 - 절차 : 경영안정화자금 융자 추천서 (경제통상진흥원) ⇨ 보증서 발급(제주신용보증재단) ⇨ 대출 (금융기관)
 - 예산 : 2억 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자체재원 추가, 기업별 5천만 원 이내, 차등지급)
- 골목상권살리기 제주신용보증재단 특별보증 출연
 - 내용 : 저신용, 저소득 골목상권 자영업자 생계/운영자금 무담보, 소액대출 특별보증
 - 절차 : 특별 출연(지자체 18억 원+재단 2억 원) ⇨ 보증서 발급(제주신용보증재단) ⇨

89) 뉴제주일보(<http://www.jejuilbo.net>)

대출 (금융기관)

- 예산 : 300억 원(제주신용보증재단 예산, 기업별 3천만 원 이내)

■ 위생시설개선자금 용자

- 내용 :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 모범음식점, 어린이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개선 자금
- 절차 : 업주 용자신청(농협, 제주은행) ⇨ 용자추천서 발급(시청) ⇨ 금융기관으로 자금 이체(도청) ⇨ 대출 (농협, 제주은행)
- 예산 : 5억 원(업체별 1~7천만 원, 차등지급)

■ 관광진흥기금 용자이자 차액 지원

- 내용 : 관광시설사업체에 대한 자금별 용자추천액 대출실행에 따른 이자차액보전
- 절차 : 용자추천(도청) ⇨ 대출 신청(사업자) ⇨ 대출(15개 협약 금융기관) ⇨ 이자차액보전(도청)
- 예산 : 154억 원(개보수자금 업체별 12억 원(개인), 24억 원(법인)이내, 경영안정자금 1.2억 원(개인), 12억 원(법인) 차등 지급)

3-1-3 중소기업 지원 비금융 현황 (중소기업 지원 금융액 881억 원 중 비금융 지원 약 405억 원)

- 중소기업 비금융 지원 금융 규모는 약 405억원으로 기술 분야, 인력 분야, 수출 분야, 내수 분야, 창업 분야, 경영 분야, 기타 분야로 나누어 지원되고 있고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이 파악됨. 하지만 중소기업의 규모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자금으로 중소기업 육성 측면 보다는 인건비 등 제 비용의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운영이나 성장을 위한 목적의 자금지원으로는 규모가 작다고 판단됨
- 기술 분야 지원금 (108억 원) : 16개 사업 분야로 R&D, 생산기술, 스마트공장, 청정에너지, 지역특화 전략제품개발, 디지털제조, 스마트그리드, 경제협력권산업, 기술융복합, 기술거래촉진, 지식재산 등의 기술 분야를 지원함. 기술 분야는 R&D과제 발굴, 스마트공장, 지역특화전략제품, 첨단제조기업 제조설비 지원 등의 육성사업들이 있으나 주로 국가 직접지원 사업으로 도에 특화된 사업과 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
- 인력 분야 지원금 (126억 원) : 10 개 사업 분야로 청년/중장년 취업, 소상공인/수출기업/물류기업/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마을기업 육성 등 분야의 주로 인건비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되고 있음

- 수출 분야 지원금 (36억 원) : 19개 사업 분야로 FTA, 해외지사화, 수출 물류, 수출보험료, 해외시장 조사, 수출 선도 글로벌 역량, 인플루언서 마케팅, 해외전시회, 농수산물품 해외진출, 수출 상품 샘플, 외국어 홍보 등으로 제주지역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보조금 형태로 지원됨
- 내수 분야 지원금 (46억 원) : 14개 사업 분야로 e-제주몰, 디자인, 국내판로 지원, 마케팅, 물류센터, 박람회, 포럼, 제주마씸, 품질인증 등 제주 산업체의 국내 판로 확대와 매출 증대를 위한 보조금 형태로 지원됨
- 창업 분야 지원금 (17억 원) : 8개 사업 분야로 창업보육센터, 창업 프로젝트, 아이디어 창업, 혁신 창업, 벤처기업 육성, 수산산업 창업 등의 영역에서 스타트업의 육성을 위한 간접지원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창업기업을 위한 투자의 자금 공급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경영 분야 지원금 (38억 원) : 11개 사업 분야로 빅데이터, 식품가공시설, 환경개선, 성장유망 인증, 혁신성장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컨설팅, 협동조합 설립,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등 중소기업의 경영 개선과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음
- 기타 분야 지원금 (30억 원) : 4개 사업 분야로 착한가격업소, 이전기업 설비투자, 여성기업 등 기타 분야에 대한 지원금으로 지원됨

3-2 제주 인증 사회적경제적 기업 현황 및 금융 지원 현황

3-2-1 인증 사회적경제 기업 현황⁹⁰⁾

- 제주 지역 인증 사회적경제적 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은 기업체 수, 종사자 수 등 양적으로는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제주 전체 기업 수나 제주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매우 낮다고 파악됨
- 제주 지역 인증 사회적경제기업 수는 2016년 285개에서 2022년 11월 현재 646개로 약 227% 증가로 대폭 증가된 것으로 파악됨. 하지만 이 기업 수도 전체 제주 기업체 수 대비 비율은 0.91%로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파악되지만 대부분 영세한 기업으로 숫자에 의한 비교는 의미가 없다고 봄
- 인증 사회적경제적 기업 종사자 수는 2016년 1,710명에서 2022년 11월 현재 3,630명

90) 2023년 사회적경제 발전 시행계획,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2022.12, p4

으로 212% 대폭 증가하였으나, 전체 제주 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 수 대비 1.26% 비중으로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분석됨

- 인증 사회적경제적 기업의 매출액은 2016년 615억 원에서 2022년 11월 현재 1,306억 원으로 212% 대폭 증가했으나, 전체 제주 기업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8%로 기업체 수, 고용 인력 수 비중 대비 매우 낮은 비중으로 분석됨. 이는 인증사회적기업이 고용 측면에서는 다소 효과가 있으나 매출 등 생산성 측면에서는 떨어짐을 방증하고 있음

3-2-2 제주 인증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현황 (금융, 비금융)

- 인증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다음과 같은 소규모의 대출과 보증 지원으로 실제 지원 금액은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미미한 것으로 파악됨
 - 미소금융 소액 대출
 - 소셜벤처 케피털
 - 비영리기관 대출
 - 사회적경제기업 대출: 서민금융진흥원 6억 원(2023년)
 -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선정기업 이자보전 지원: NH농협 12백만 원
 - 사회적경제조직 특례 보증 대출 (제주은행+제주신용보증재단)
 - 신용보증기금 나눔 보증
 - 제주 중소기업육성자금 사회적경제기업 운전자금
 - 중소기업육성 기금 사회적경제 우대 지원: 13.6억 원(2022년)
- 인증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비금융 서비스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수행되고 있으나 규모가 매우 영세하여 지원의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됨. 또한 아래와 같은 제주지역 공사, 대기업에서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도 일회성에 그치거나 규모가 작아서 실제 사회적경제기업에 큰 도움이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임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공사(JDC): 지역상생, 복지나눔, JDC입주기업지원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 감귤주스 무상배송사업, 페트병 자동수거 보상기, 무색 폐플라스틱 별도 수거 사업
 - 한국마사회: 사회적경제성장지원 사업
 - 한국공항공사: 공항 추석상품 판매전 및 사회적경제 제품 홍보
 - 공무원연금공단: 사회적경제 홍보 및 판로 지원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로컬푸드 유통활성화지원

3-3 제주 금융기관 현황

① 예금 은행 금융 기관 수 : 77개⁹¹⁾

- 일반은행 본점 (1개) : 제주은행이 유일
- 일반은행 지점/출장소 (47개) : 시중은행 지점/출장소 18개, 지방은행(제주은행) 지점/출장소 29개
- 특수은행 지점/출장소 (29개) : 기업은행 3개, 농협 23개, 수협 2개, 산업은행 1개

② 비은행 금융 기관 수 : 368개⁹²⁾

- 신탁회사 90 개, 자산운용회사 92개, 상호저축은행 4개, 신용협동조합 29개, 상호금융 32개, 새마을금고 42개, 우체국금융 35개, 생명보험회사 44개

③ 제주 금융기관 여수신 규모⁹³⁾

- 2021년 말 기준 제주 지역 여신은 약 2.5조 원, 수신은 1.2조 원으로 집계됨. 특이한 점은 제주 지역의 여신이 수신에 비해 약 2배 규모로 제주 지역의 자금 공급과 수요가 불균형함을 알 수 있고, 수신자금은 제주 외 지역에서 조달됨을 알 수 있어 이는 도내 금융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음
- 2021년 말 기준 금융기관 별 여신은 비은행 금융기관 1.6조 원이고 은행 금융기관 0.9조 원으로 상대적으로 은행 보다는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출 규모가 더 큼을 알 수 있음. 이는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금리 등 금융 이용 조건이 불리한 비은행 금융기관을 이용함으로써, 불리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음
- 2021년 말 기준 대출처에 대한 통계에서는 기업 대출 약 1.6조 원, 가계대출 약 0.7조 원으로 기업대출의 비중이 가계대출보다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음. 이는 제주 지역 대출금이 사업으로 인한 부가가치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2022년 9월 말 현재 예금은행 연체율은 0.27%로 전국 평균 0.21% 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파악됨

91) 제주지역 금융기관 점포 현황, 한국은행 2022.3.21. <http://www.bok.or.kr>

92) 제주지역 금융기관 점포 현황, 한국은행 2022.3.21. <http://www.bok.or.kr>

93) 2022년 9월중 제주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 한국은행 제주본부, 2022.11.29

4. 요약 및 시사점

본 절에서는 국내·외 사회적금융과 사회적은행 현황, 제주지역 사회적 금융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제주형 사회적은행 설립을 위한 필요성과 발전가능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국내에 사회적은행은 존재하지 않으나 2018년 금융위원회가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사회연대기금설립 등 사회적금융의 양적 성장이 이루어져 사회적은행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음
 - 비영리법인들의 소액신용대출사업과 대부업 형태의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기업과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왔으나 사회적은행의 역할로서는 역부족
 - 이에 사회적은행 설립 준비를 위한 추진이 진행되고 있으나 법 개정의 어려움과 금융당국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우려로 아직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음
 - 그러나 사회적은행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해외 사회적은행은 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설립 형태에 따라 설립 요건의 차이는 있지만,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면서도 재무적 수익을 동시에 창출할 수 있는 은행들이 금융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대표적인 해외 사회적은행 사례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
 - 네덜란드의 트리오도스 은행은 세계에서 가장 큰 사회적은행으로 전업은행 인가를 받아 다른 상업은행과 동일하게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여 이득을 취할 수 있어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성장하고 있음
 - 독일의 GLS은행의 경우 협동조합은행으로 설립하여 비조합원에게도 금융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국내 신용협동조합과 유사함. 다만 독일은 국내와 달리 협동조합은행만 770개에 달하기 때문에 국내 상황과 평면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움
 - 캐나다의 밴시티신협은 일반 시민들이 개방형 신탁을 추구하며 100% 출자한 사회적은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순이익의 30%를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특징이 있음
 - 방글라데시 그라민은행은 정부 출자 전에는 사회적금융기관들의 모델이 되었으나, 정부 출자가 진행되면서 정부출신 이사에 의한 운영 등 정부통제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사회적은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다만 특별법령에 의해 설립되었다는 점에서 사회적은행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참고할 수 있음
 - 특히 유럽형 사회적은행인 트리오도스은행과 GLS은행의 경우 투명성과 지속가능성을 기반으로 하는 핵심가치를 정하고 모든 영역에 이를 반영하고 있음. 또한 환경, 문화,

사회를 고려한 지속가능성 있는 사업에 투자하며 배제하는 사업 기준이 명확하게 공개되어 있음

- 활성화되고 있는 사회적 은행들은 대출과 투자 심사를 엄격하게 수행, 특히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사업 또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고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신뢰를 주고 있음

■ 해외 사회적은행들이 일반은행들과의 경쟁 속에서 지속적인 성장 및 발전하는 것을 볼 때 국내에서도 설립된다면 민간 금융시장에서 경쟁하며 성장할 것으로 보임

- 일관된 사업기준과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진다면 단기적인 이익이 아니더라도 장기적인 사회가치를 보고 예금을 맡기거나 투자하는 금융소비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해외의 경우 은행 설립 자본금 요건이 국내에 비해 상당히 낮거나 국가 규모, 문화 및 사회적 실정이 국내와 다르다는 점에서 비교 검토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음

■ 제주 중소기업과 제주 인증 사회경제적 기업의 현황 및 금융 지원 현황 및 제주 금융기관 현황을 통해 제주지역 사회적금융 현황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특징이 있음

- 제주지역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종업원 수 4인 이하 중소기업수가 전체 기업 수의 81.9%이며 기업의 형태도 개인 기업이 82%로 나타나 중소기업 자체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제주 지역에는 6만개가 넘는 많은 중소기업이 있고⁹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주업종이 규모가 영세한 도소매와 음식업에 집중되어 있어 기업의 성장에 따른 고용의 증가, 도내 경제적 가치 증가 등에는 한계가 있음
- 제주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금융 지원 효과는 타 지역 보다 월등⁹⁵⁾한 것으로 판단됨. 제주기업의 정책자금 지원 효과 분석 연구에 따르면 제주 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금융 지원을 받은 기업의 성장성, 수익성, 생산성, 활동성이 받지 않은 기업에 비해 타 지역 보다 우월한 것으로 분석되어 제주형 사회적은행과 같은 은행으로부터의 지원의 효과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사회적경제기업 수 대비 자금 공급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6만여 개가 넘는 중소기업 수에 비해 중소기업 전용 자금 공급은 매우 부족하여 기업의 부족한 자금은 도의 비금융지원 (약 405억 원)⁹⁶⁾과 대표 등 기업의 특수관계인 차입(가수금) 등이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대표적인 자금 공급원인 비은행 금융기관과 시중 은행의 경우에도 용자를 받기 위해 물적 담보(담보나 특허 등)나 신용보증을 요구하여 자금 조달 여건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으로 파악됨
- 제주 지역 대기업, 공사 등 사회적금융 기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제주 경제의 큰

94) 통계청, 사업체조사, 2019.

95) 제주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의 지원효과 분석(2016.12), 한국은행 제주본부

96) 제주특별자치도, 2022 중소기업지원시책, 2022.

역할을 담당하는 대기업, 공사, 기관의 사회적금융 기여도는 소규모 사회공헌 차원에 그치고 있어, 사회적금융 참여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대규모 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한국마사회, 공항공사, 공무원연금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은 지속가능한 제주지역의 성장을 위해 체계적인 금융지원에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인증 사회경제기업 전용 사회적 목적 지향 자금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향후 사회적은행이 만들어지면 인증사회경제기업 전용펀드 등 전용 금융 프로그램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제주 창업 활성화를 위한 인내자본 확보가 중요함. 규모가 매우 영세한 제주 창업기업 특히 취약한 벤처 창업 생태계를 위한 인내자본이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사회적은행에서는 창업기업이 성장과 함께 지속가능성을 높여 우량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초기 운영자금, 시설자금, 사업확장자금 등을 적시에 공급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산업분야는 현재처럼 소규모 대출 중심의 금융 지원 한계를 극복하고 목적 지향의 프로젝트에 대규모 투자를 견인할 앵커 투자자본을 통해 기존 산업 고도화 및 미래 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사회적금융지원이 중요함
- 우수한 관광,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한 환경, 생태, 힐링 등 고부가 관광산업 고도화를 지원하고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농수축산업 분야와 연관된 친환경 혁신 농수축산업, 바이오 등 산업 고도화를 선도하는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이 필요함. 아울러 수출주도형으로 도내 산업 구조를 개편해야 하는 당면 과제도 이러한 금융 지원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III. 제주지역 사회적은행 설립방안

1. 법·제도적 검토

- 국내에 여수신이 가능한 금융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국책은행을 제외하고 「은행법」,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이라 한다), 「신용협동조합법」(이하 ‘신협법’이라 한다),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등이 있음. 국책은행으로 설립하려면 별도의 법 제정이 필요함
- 영리성격으로 설립하는 경우에는 은행법과 인터넷전문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비영리성격으로 설립하는 경우에는 신협법, 새마을금고법을 고려해볼 수 있음. 이에 따라 제주형 사회적은행 설립을 위해서 각 법에 따른 설립 요건을 비교 검토 하고 나아가 특별법 제정을 통한 사회적은행 설립방안도 제안하고자 함

1-1 「은행법」 및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상 설립 검토

1-1-1 「은행법」 및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설립 요건

- 은행업은 예금자보호, 자금수급에 있어서 국민경제적 기능 수행 등 공공성이 요구되는 산업이므로 특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⁹⁷⁾
-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인가심사기준은 최저자본금과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를 제외하고는 은행법에 따르고 있음

① 최저자본금

- 전국은행의 경우 자본금이 1천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지방은행의 경우 250억 원 이상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은행법 제8조 제2항 제1호). 인터넷전문은행은 지방은행과 동일하게

97) 금융감독원, 「은행업 인가 매뉴얼」, 2015.7, 1면.

250억 원 이상이어야 함(인터넷전문은행법 제4조)

- 은행은 은행업을 영위할 때 최저자본금을 유지하여야 함

② 자금조달방안

- 「은행업감독규정」의 은행업 인가 심사기준에 따르면 은행업 경영 및 사업계획에 소요되는 자금조달방안이 현실성이 있어야 함

- 은행은 은행을 경영하기 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은행 영업이 개시됨과 동시에 은행법상 경영지도기준 등 건전성 규제비율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최저자본금을 포함한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하고 자금의 조달방법(자기자본 및 차입금)도 적정하여야 함⁹⁸⁾

- 또한 추가적인 자본조달이 가능하여야 함. 설립 당시 예측한 설립 및 초기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이 합리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은 변수로 인해 자금조달계획 수준을 초과하는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추가적인 자본조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⁹⁹⁾

③ 주주구성계획 및 대주주 요건

- 은행의 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은행법상 한도초과보유주주 및 대주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산업자본의 경우 은행 주식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못함(은행법 제15조, 제15조의3, 제16조의2)

-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자와 그와 특수관계인을 동일인이라고 하는데,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의 자산 또는 자본이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자를 비금융주력자라고 함.¹⁰⁰⁾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당해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주요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이었던 자는 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없음¹⁰¹⁾

- 은행은 주주 1인을 포함한 동일인이 은행의 의결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지방은

98) 금융감독원, 「은행업 인가 매뉴얼」, 2015.7, 8면.

99) 금융감독원, 「은행업 인가 매뉴얼」, 2015.7, 9면.

100)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금융주력자라고 함

① 동일인중 비금융부문의 자본비중 25%이상 또는 비금융부문 자산합계 2조원이상, ② ①이 4%를 초과하여 투자한 투자회사(유추열펀드), ③ 사모투자전문회사(PEF)로서 ①,②의 자가 PEF출자총액의 10%이상 지분을 소유하는 LP(유한책임사원)이거나 ①,②의 자가 PEF의 GP(무한책임사원)인 경우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각각의 계열회사가 취득한 PEF의 지분의 합이 30%이상, ④ ③에 해당하는 PEF가 특수목적회사(SPC)의 주식 또는 지분 4%를 초과하여 취득·보유하거나 임원 임면 등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SP

101) 이 경우 그 대주주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부실책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자 또는 금융위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의하여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은행업감독규정 [별표2-2] 은행업 인가 심사기준)

행의 경우 15%)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거나, 4%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당해 동일인이 최대주주이거나 은행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인 경우의 그 주주 1인(지방은행은 제외)을 대주주라고 하는데, 동일인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필요함

- 원칙적으로 동일인은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지방은행의 경우는 15%)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으나 은행주식을 10% 초과하여 보유하고자 하는 동일인(비금융주력자가 아니어야 함)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어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비금융주력자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은행주식의 4%(지방은행의 경우 15%)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으나, 4%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재무건전성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 10%까지 주식 보유 가능함

④ 사업계획

- 경영목표나 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경영전략이 마련되어 있어야 함. 은행의 경영목표 및 동 목표의 실현을 위한 경영전략이 구체적이고 타당해야하며, 현재의 시장 상황 및 사업모델의 지속가능성, 사업계획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등을 정확히 분석해야 함
- 사업계획이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추정이 이루어졌으며, 시장상황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어야 하며, 사업계획을 고려한 추정재무제표가 일관성 있고, 합리적 설명이 가능하여야 함
- 경영지도기준 및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위험관리와 은행이용자 보호를 위해 은행 자체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체제도 구축하여야 함
 - 이사회와 경영진의 관계, 이사회 구성 및 운영방향,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책임 등이 투명하고, 은행이용자 또는 주주 보호와 재무 및 영업의 건전성 유지에 적합해야함
 - 임직원의 법규준수, 위험관리 및 임직원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적절한 감독 및 내부통제체제를 구축해야 함
 - 준법감시인의 업무상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으며, 이사회 등 회의 참석 및 자료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함
 - 준법감시인,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등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여야 함
 - 이사회 구성계획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이사회 구성방법에 부합해야 함

- 영업내용 및 방법이 법령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에 부합해야 함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구성 등의 지배구조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함

⑤ 전문인력 적정성

- 사업계획 및 경제상황 등에 비추어 인가신청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인력이 확보되어야 하며, 리스크관리, 여신심사, 파생상품 등 전문분야의 복잡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함
- 또한 자본금 규모 및 추가자본 확충계획에 비추어 점포수, 인원수가 적정해야 함

⑥ 영업시설 및 물적설비 적정성

-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및 여신심사체계의 구축이 적정하여야 하며, 정관이 관계법규에 부합하고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내부기관 및 감독기관 등 감독·검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적 장애가 없어야 함
- 업무범위 및 규모에 부합하는 영업시설 및 전산체계를 갖추고 부서인원 대비 충분한 업무 공간 및 사무장비를 갖추어야 함
- 은행과 은행이용자간,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업무 간에는 정보교류를 차단(임원 겸직, 시설 공동사용 등)하는 등 공정하게 관리하여야 함
- 전산체계 및 물적설비를 갖추어야 함
 - 주전산기, DB서버, 저장장치, 단말기, 전용회선, 통신설비 등 업무관련 전산설비가 안정성 및 성능이 충분히 검증되었으며, 향후 영업의 급속한 확대에도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구축되어 있어야 함
 - 침입탐지, 침입방지시스템, 방화벽 등 보안체계가 구축되어 있어야 함
 - 정보이용자 확인 및 전산실 출입통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함
 -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백업장치가 구축되어 있고, 백업자료가 별도 장소에 보관·관리되고 있어야 함
 - 전산설비, 통신수단, 그 밖에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검증된 보안설비를 갖추어야 함
 - 파업 등 불시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이 마련되어 있어야 함
 -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가 확보되어 있어야 함
 - 비상사태 발생 시 즉시 구현이 가능한 비상계획이 마련되어 있어야 함

〈표 6〉 은행법 및 인터넷전문은행법상 은행 인가요건

	은행법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최저자본금	1000억 원(지방은행 250억 원)	250억 원
자금조달방안	자금조달방안이 적정할 것 (① 자금조달 현실성, ② 추가적인 자본 조달 가능성)	은행법을 따름
주주구성계획	- 10%(지방은행 15%) 초과하여 주식 보유 불가 - 비금융주력자 4%(지방은행 15%) 초과하여 주식 보유 불가	- 비금융주력자 34%이내 주식 보유 가능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요건 규정([별표])) - 비금융주력자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등 대주주에 대해 엄격한 감시 체제
대주주 또는 발기인	- (대주주 적격성 요건)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 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 발기인 및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¹⁰²⁾	은행법을 따름
사업계획	- (경영전략 및 수익전망) 은행의 경영목표, 경영전략의 적정성, 추정재무제표의 타당성이 있을 것 - (경영지도기준)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 - (내부통제, 준법감시 및 리스크 관리) 위험관리와 금융사고 예방, 은행 이용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장치와 업무방법이 마련되어 있을 것 - 이사회 및 경영지배구조가 적정할 것 - 영업내용 및 방법이 법령 및 건전한 금융 거래질서에 부합할 것	은행법을 따름
전문인력	(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 리스크관리, 여신심사, 파생상품 등 전문 인력 확보 계획이 적정할 것	은행법을 따름
물적설비	- 업무범위 및 규모에 부합하는 영업시설 및 전산체계를 갖출 것 - 전산설비와 통신수단, 보안설비, 보완설비 등을 갖출 것	은행법을 따름
영업범위	전국 영업구역(지방은행 제외)	전국 영업구역
인가기준	은행업감독규정 [별표2의 2] 은행업 인가 심사기준	은행법을 따름

출처 :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은행업감독규정」,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등 법령에 따른 요건을 살펴보고 연구자가 작성함

10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

1-1-2 검토

- 은행법과 인터넷전문은행법상 사회적은행이 설립될 경우 전국을 영업단위로 할 수 있으며, 은행의 고유업무, 경영업무, 부수업무를 영위할 수 있음.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지점망 없이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은행법상의 은행보다 인가기준에 대한 특별규정(최저자본금 및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 가능 비율 등)이 적용되어 설립이 보다 용이함
- 또한 영리에 따른 상법상의 회사이기 때문에 주주총회, 이사회 등을 통해 자율적인 경영이 가능하고 “은행”이라는 명칭 사용이 가능함
- 다만 사회적은행의 경우 은행법상 일반은행과 다르게 사회적 수익과 재무적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기 때문에 일반은행과 동일한 인가요건, 건전성 규제 요건이 아닌 사회적은행의 특수성을 고려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은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영국, 미국 등은 소규모 특화은행에 대해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¹⁰³⁾ 영국의 경우 업무범위가 소매금융으로 제한되는 은행(challenger bank)에 대해 자본금요건을 완화하고 있음(500만 유로→100만 파운드). 또한 미국의 경우 특수목적국법은행(special purpose national bank) 제도를 운영하여, 신탁업, 대출, 지급결제서비스 등에 대해 인가하고 있음. 이처럼 사회적은행의 경우에도 특화된 목적에 맞게 업무를 세분화하여 은행법상의 은행 설립 요건보다 완화한다면 보다 설립이 용이할 것임
- 사회적은행은 실물경제 위주로 투자 및 대출을 운영하며, 사회적 가치가 높으면서도 재무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하기 때문에 최저자본금 요건은 완화하되 사업 계획, 업무범위, 사회적 가치 평가 기준 등을 엄격히 적용하여 사회적 금융 전문은행의 실질적인 진입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그 조치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②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이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職)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잃지 아니한다.

103) 금융위원회,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2018.5.2., 22면.

-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당시에도 온라인·비대면 영업의 특성으로 발생할 리스크를 우려하여 인가심사 시 사업계획의 혁신성,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등 별도의 심사 고려사항을 두었음. 이처럼 사회적은행의 경우에도 재무적 수익과 사회적 수익을 동시에 창출하여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인가심사 시 별도의 고려사항으로 두어 심사한다면 충분히 일반은행으로 설립이 가능함
 -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i) 사업계획의 혁신성, ii) 주주구성과 사업모델의 안정성, iii)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iv) 국내 금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 v) 해외진출 가능성을 인가심사 시 주요 고려사항으로 두고 있음¹⁰⁴⁾
 - 이런 고려사항들은 사회적은행의 경우에도 모두 기존 금융관행을 혁신하고 기존 은행 시장을 경쟁적으로 변화시킨다는 점과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을 갖추었다는 점 등 충분히 설립에 대한 설득이 가능함. 그러므로 사회적은행에 맞는 별도의 인가심사 사항을 둔다면 사회적은행도 「은행법」상의 은행으로 설립 가능함
- 사업계획에서도 사회적은행은 일반은행과 달리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기 때문에 사회적은행의 사업계획 심사 시에는 그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전문인력에 있어서도 사회적은행의 경우 ESG를 고려한 투자 및 자금공여 등에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확보하도록 별도의 심사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 사회적은행만의 인가심사를 위해서는 별도의 특례규정이 마련되어야 함. 특별법이나 은행법 개정도 가능하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신속하게 사회적은행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특례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이 필요함

1-2 「상호저축은행법」상 설립 검토

1-2-1 「상호저축은행법」상 은행 설립요건

- 상호저축은행은 주식회사로 증권업 또는 보험업과는 달리 단일의 영업인가제도를 취하고

104)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시 주요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음(금융감독원, 「은행업 인가 매뉴얼」, 2015.7, 6-7면).

- ① 사업계획의 혁신성(Innovation)
 - 기존 금융관행을 혁신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기존 은행시장을 보다 경쟁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여부
- ② 주주구성과 사업모델의 안정성(Stability)
 -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춘 주주로 구성되고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을 갖추었는지 여부
- ③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Consumer Convenience)
 -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금융소비자에게 더 낮은 비용이나 좋은 조건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소비자가 점포 방문을 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여부
- ④ 국내 금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Competitiveness)
 - 차별화된 금융기법, 고객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금융산업 부가가치를 제고시키고 신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지 여부
- ⑤ 해외진출 가능성(Global Expansion)
 -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 뿐 아니라 아시아 등 해외시장 진출을 고려한 사업계획과 실천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있으며, 상호저축은행의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자본금의 차이만 존재함

- 상호저축은행의 최저자본금은 영업구역(본점소재지)별로 특별시는 120억 원, 광역시는 80억 원, 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는 40억 원에 해당함
 - 예외적으로 저축은행이 자본금을 감소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자본금을 감소할 수 있음. 자본금의 감소로 재무건전성 요건을 미달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문제를 초래하지 않는지 확인하여야 함
- 발기인과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을 확보해야함. 전문인력의 경우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전문교육과정이나 연수과정을 이수하여 상당한 전문지식을 구비한 자이어야 함
- 필요한 전산설비 및 사무실 등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 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어야 함
- 사업계획이 수지전망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BIS비율이 7% 이상 유지 가능하여야 함

〈표 7〉 상호저축은행법상 은행 인가요건

	상호저축은행법
최저자본금	- 120억 원(특별시) - 80억 원(광역시) - 40억 원(특별자치시, 도)
주주구성계획	-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대주주의 요건 규정(별표1))
대주주 또는 발기인	- 발기인 및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 - 업무 경력 5년 이상, 업무 관련 전문교육과정이나 연수과정 이수 등
사업계획	- 수지 전망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 자기자본비율이 5% 이상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유지
전문인력	① 관련 업무 5년이상 근무 ②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과정이나 연수과정 이수 ③ 상기 인력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자
물적설비	-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설비사무실 등의 공간 확보
영업범위	- 본점을 제외한 지점·출장소 설치 불가 (다만, 추가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 인가를 받으면 지점 설치 가능)
인가기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출처 :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등 법령에 따른 요건을 살펴보고 연구자가 작성함

1-2-2 검토

- 사회적저축은행의 경우 최저자본금, 주주구성계획, 자금조달방안 등 진입규제가 낮다는 장점이 있으나 영업범위에 대한 제한으로 전국적인 영업이 어려움. 그러나 제주형 사회적저축은행의 경우 영업구역을 제주도로 한정할 경우 40억 원에 최저자본금으로 설립이 가능함
- 금융위원회의 인가에 따라 자본금 감소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은행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설립이 용이하지만, “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상호저축은행” 또는 “저축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함
- 다만 저축은행의 경우 BIS비율이 인가기준은 5%¹⁰⁵⁾이지만, 경영건전성기준상 7%(자산총액 1조원 이상 8%)¹⁰⁶⁾ 이상이어야 함. 그러나 실제로 금융당국은 잠재위험의 현실

105)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시행 2022. 12. 20.] [대통령령 제33112호, 2022. 12. 20., 타법개정] 제6조의2(전문 인력과 물적 시설 등에 관한 인가의 세부 요건 등) ① 법 제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 인력 및 물적 시설의 세부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9. 20., 2016. 7. 28.>

1. 발기인(발기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수행하려는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전문성을 갖춘 전문 인력을 임직원으로 확보할 것

2.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설비를 갖추고, 사무실 등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것

② 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에 관한 인가의 세부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9. 20., 2014. 2. 11., 2016. 6. 28., 2019. 12. 31.>

1. 수지 전망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2. 제11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5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

③ 삭제 <2008. 1. 18.>

④ 법 제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0. 9. 20.>

1.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⑤ 법 제6조의2제1항제4호의 대주주는 별표 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 9. 20.>

⑥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제5항에 따른 요건에 관한 조사를 요청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9. 20.>

⑦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세부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9. 20.>

106) 상호저축은행법 감독규정[시행 2023. 2. 2.] [금융위원회고시 제2023-3호, 2023. 2. 2., 일부개정] 제44조(건전성비율) ① 법 제22조의2제1항 및 시행령 제11조의6제1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하며, 상호저축은행은 동 기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기준은 직전 분기말 대출금 잔액이 1천억원 미만인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 100분의 7(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은 100분의 8)

2. 대손충당금비율 : 100분의 100이상

3. 퇴직급여충당금비율 : 100분의 100이상

4. 예금등에 대한 대출금 비율(이하“예대율”이라 한다) : 100분의 100이하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의 산정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하며, 감독원장은 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외에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③ 상호저축은행은 매회계연도말에는 결산을, 매분기말에는 가결산을 실시하고, 결산일 및 가결산일 기준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전성비율을 산정하여 결산일 및 가결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상호저축은행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하여 보고하는 경우 분기별

화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저축은행의 경우에도 BIS비율을 11% 이상으로 권고하고 있음.¹⁰⁷⁾ 사회적저축은행은 초기에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투자하는 과정에서 BIS비율을 맞추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사회적저축은행만의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 금융감독원이 리스크를 예견하여 경기상황에 따라 권고하는 수준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사회적저축은행만의 별도 권고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 「상호저축은행법」은 「은행법」에 비해 완화된 인가요건을 가지고 있으나 은행법과 같이 금융위원회가 인가권자이며, 인가 이후에도 업권별 경쟁력 검토 및 규제 준수가 엄격함. 인가기준에 비해 저축은행 유지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에 사회적저축은행이 설립된다고 하더라도 유지를 위해서는 일반은행과 유사한 자산건전성 등 요건이 필요함
- 초기 설립 자본금의 부담은 적지만, 영업구역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별도 인가를 받아야 하고, 지점 설치 시 자기자본을 최소자본금만큼 증액해야함(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6조의3)
- 저축은행은 상대적으로 일반은행에 비해 예대금리차가 크데, 이러한 일반적인 인식으로 인해 사회적저축은행의 초기 사회적 가치 등 설립 취지를 홍보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음
 - 2022년 12월 기준 저축은행 예대금리차는 약 8%에 해당함(예금 5.70%, 대출 13.07%)¹⁰⁸⁾

1-3 「신용협동조합법」상 설립 검토

1-3-1 「신용협동조합법」상 신탁 설립 요건

- 신탁은 공동유대를 바탕으로 조합원간의 금융을 제공하는 것으로 비영리법인에 해당함. 신탁과 같은 상호금융기관들은 기관별 주무부서가 다름. 신탁(금융위원회),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등이 있음
- 신탁은 공동유대별로 지역신탁, 직장신탁, 단체신탁으로 나뉨
 - 지역신탁은 행정구역 등 지리적 범위를 공동유대로 설정하고, 직장신탁은 계열사 등을 포함한 직장을 공동유대로 함. 단체신탁은 교회 등의 종교단체, 직종단체 등이 있음
- 조합을 설립하려면 공동유대에 소속된 30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결의를 받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설립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함. 신탁 설립 인가

로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를 가결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07) 김경찬, “저축은행, BIS 비율 6년 만에 최저 수준”, 한국금융, 2023.01.16., <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301140452265558dd55077bc2_18>

108) 한국은행 보도자료, “2022년 12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2023.01.27., 2면.

신청 접수는 신협중앙회에서 담당하고 있어 신협중앙회에 인가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는 형태임

① 출자금 요건

- 신협의 최저자본금은 지역조합, 직장조합, 단체조합에 따라 다름
 - 지역조합의 경우 특별시·광역시는 3억 원, 특별자치시·시는 2억 원, 군단위는 5천만 원에 해당하고, 직장조합의 경우 4천만 원에 해당함. 단체조합의 경우 특별시·광역시는 1억 원, 특별자치시·시는 8천만 원, 군단위는 5천만 원에 해당함
-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출자좌수는 100분의 10이내이어야 함

② 임원 등 자격 요건

- 조합의 임원 및 발기인은 신협법 제28조에서 정한 자격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조합의 임원은 신협중앙회장이 실시하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전문인력의 경우 ①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과정이나 연수과정을 이수하여 상당한 전문지식을 구비한 자, ②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③ 전문자격증 보유 등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자로 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직원으로 확보하여야 함

③ 조직구조 및 관리운영체계 요건

- 신협중앙회가 정한 표준정관 및 표준업무방법서에 의거하여 조합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없어야 하며, 조합의 사무소는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으로 신협중앙회와 호환이 가능한 전자계산조직을 갖추어야 함

④ 사업계획서 요건

- 영업개시 후 3개년 간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영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어야 하며, 자금 조달·운영계획 및 인력운영계획이 주된 고객, 주된 서비스 내용 등 영업전략에 비추어 적정하여야 함

〈표 8〉 신탁법상 신탁 인가요건

신탁법상 신탁 인가요건	
신용협동조합법	
최저자본금	- 지역조합 5천만 원~3억 원 - 직장조합 4천만 원 - 단체조합 5천만 원~1억 원
자금조달방안	사업계획의 자금 조달방법이 적정할 것
주주구성계획	10% 초과 출자좌수 보유 불가
대주주 또는 발기인	- 발기인이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 필요 - 발기인 및 임원이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닐 것
사업계획	- 지속적인 사업 시행 적합성 - 사업개시 후 3년간의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의 타당성 - 자금 조달 적정성
전문인력	① 임직원은 중앙회장이 실시하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교육과정 이수 ② 금융위원회가 사업 수행 전문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요건을 갖춘 인력 확보
물적설비	- 바닥 면적이 30제곱미터이상인 사무실 확보 - 중앙회와 호환 가능한 전산조직
영업범위	공동유대 범위 내
인가기준	신용협동조합인가지침,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출처 : 「신용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신용협동조합인가지침」, 「상호금융업감독규정」 등 법령에 따른 요건을 살펴보고 연구자가 작성함

1-3-2 검토

- 신탁은 공동유대를 바탕으로 한 비영리법인 상호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사회적은행의 사업취지에 부합하는 모델로 볼 수 있으며, 사회적 가치의 취지와 함께 여수신이 가능한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가능함
- 은행보다 설립이 비교적 용이하며, 공동유대라는 목적을 가진 조합원들과 운영되기 때문에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의사결정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음
- 신탁의 경우 일반은행보다 설립요건은 완화되어 있으나 신탁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신탁 중앙회장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함
 - 신탁중앙회장이 설립인가신청에 대해 의견을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의 제출하는 형태이다 보니 신탁중앙회의 의견이 허가의 중요한 요인임
- 사회적신탁의 경우 사회적저축은행과 마찬가지로 전국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고 공동유대범위 내 한정된 지역에서만 영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함

- 사회적신탁의 경우 예외적으로 조합 가입이 어려운 금융취약계층 또는 사회적경제기업 등이 비조합원이더라도 조합원과 동일한 금융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현재 신탁의 경우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의 경우 전체 대출의 1/3 이내로 총한도 규제가 있음
- 조합원 수 100인 이상,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 제한(10%), 발기인 창립총회 등 설립을 위한 회원 모집이 필요하고, 조합 총회 의결권이 출자금에 비례하지 않음(1인 1표)

1-4 「새마을금고법」상 설립 검토

1-4-1 「새마을금고법」상 새마을금고 설립 요건

- 새마을금고는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개발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임(새마을금고법 제1조). 신탁과 유사하게 중앙회를 두고 있으며, 지역금고와 직장금고 등으로 나뉨
 - 새마을금고는 본래 재건국민운동본부 주도로 신용조합에서 시작되어 신용조합, 재건금고, 마을금고 등으로 혼용되어 사용되었기 때문에 신용협동조합과 유사함¹⁰⁹⁾
-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 소관으로 50명 이상의 발기인이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이 정하는 정관례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뒤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법 제7조)
 - 중앙회장은 설립인가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의견을 붙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중앙회장으로부터 설립인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함
- 사회적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 명칭을 사용하여야 함(법 제2조)

① 출자금 요건

- 새마을금고는 지역금고와 지역금고 외의 금고로 나뉘는데, 지역금고의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따라 1억 원에서 5억 원 이상으로 출자금의 차등이 존재함. 지역금고외의 금고의 경우 1억 원 이상을 출자금 요건으로 함
 - 주된 사무소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소재하는 경우 5억 원 이상, 주된 사무소가 시(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를 포함)에 소재하는 경우 3억 원 이상, 주된 사무소가 읍·면(광역시 또는 시에 설치된 읍·면 포함)에 소재하는 경우 1억 원 이상이어야 함

109) 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50년사」, 2013, 201면.

② 임원 등 자격 요건

- 임원과 발기인, 금고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는 창립총회 공고일 전일 현재 금고를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업무구역)에 6개월 이상 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 또는 생업에 종사하는 자(법인·단체에 소속된 자를 포함한다) 이어야 함
- 임원의 경우 새마을금고법 제2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신규설립 예정금고의 임직원은 설립인가 신청 전까지 금고 설립에 필요한 교육과정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교육과정을 3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 금고는 직원으로 이러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4명 이상 확보하여야 함
 -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금고 설립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야 하며, 신규설립 예정금고로부터 교육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규설립 예정금고의 임직원이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함
 - 결격사유와 관련해서 범죄경력조회, 결격사유조회, 개인 신용정보조회 등이 이루어지며 경영자의 임원 취임금지 조항 저촉여부도 확인함
- 발기인의 경우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어야 함
 - 출자능력은 출자좌수 기준 100좌 이상 및 출자금액 기준 1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재무상태의 경우 설립인가 신청 직전년도 기준 연간 재산세 중 주택분, 토지분, 건축물분 가운데 어느 하나가 발기인이 되고자 하는 자의 주소가 있는 시도별 평균 부과금액 이상을 납부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금융자산(재산세 납부 부동산 평가액 포함)이 금융부채 보다 많을 것을 요건으로 함

③ 물적 시설 요건

- 금고 사무실은 전용면적이 지역금고의 주된 사무소 99㎡(분사무소 66㎡)이상, 지역금고 외의 금고의 경우 33㎡ 이상 확보하고 회원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위치에 입지하였는지를 확인함
- 금고 사무실은 무인경비시설, 비상벨, 가스총, CCTV, 화재방비·사무실 내·외 경보기 설치 등 방호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중앙회 전산설비와 호환이 가능한 전산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④ 사업계획서 요건

- 사업계획의 타당성 - 사업개시 후 3년간의 추정재무제표와 수익 전망을 검토함. 관련하여 사무소 업무구역 내 인구수, 소득수준 등 지역사회 여건을 고려하고, 회원의 지속적인 증가 가능성 등 대출수요를 확인함. 그 외 3년간 계속 당기순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건비, 관리비, 분담금, 출연금 등 세부 지출내역을 재무제표에 적정히 반영하였는지 확인함

- 신규 설립신청 금고의 업무구역이 기 설립된 금고 또는 타 금융기관의 업무구역과 중복되어 과열경쟁에 따른 부실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는지도 검토함

■ 자금조달의 적정성 - 해당 지역본부에 속한 금고의 평균 자금조달 금리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는지 확인하고, 자금조달비용 축소를 위한 인위적 조달계획(과다한 요구불예수금 비중 등)을 확인함

■ 자금운용의 적정성 - 자금별(예치금, 대출금, 유가증권 등) 운용규모가 해당 지역본부에 속한 금고의 평균 운용규모를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 확인하고, 자금운용 수익 확대를 위한 인위적인 자금운용계획(과다한 대출금 비중 등)이 수립되지 않았는지 확인함

■ 해당 지역본부에 속한 금고의 평균 예대비율과 자금운용금리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는지 확인함

- 해당 지역본부에 속한 금고의 직전월 평균금리의 5%를 더한 수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그 외에도 새마을금고 설립목적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공헌 등 지역공동체 발전 기여를 검토하는데, 복지사업(법 제28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의 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의 실효성과 사업비를 검토함

⑤ 업무구역 범위

■ 지역금고의 업무구역은 시·군·구 단위의 행정구역을 원칙으로 함. 다만 생활권·경제권이 인접한 경우에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간 협의를 통해 인접 시·군·구의 읍·면·동을 업무구역으로 할 수 있음

■ 직장금고의 업무구역은 직장 사업체 내이지만, 해당 직장 사업체와 협력관계에 있는 인접한 직장 사업체 경내까지를 업무구역으로 할 수 있음(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처리기준 제3장)

■ 업무구역이 여러 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이를 모두 표시하여야 함

〈표 9〉 새마을금고법상 새마을금고 인가요건

새마을금고법	
최저자본금	- 지역금고 : 주된 사무소에 따라 1억 원에서 5억 원 이상 - 지역금고외의 금고 : 1억 원
자금조달방안	- 자금조달의 적정성 : 금고의 평균 자금조달 금리 반영 검토 - 자금운용의 적정성 : 자금별 운용규모 검토
주주구성계획	15% 초과 출자좌수 보유 불가
대주주 또는 발기인	- 발기인이 충분한 출자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을 갖추어야 함 - 금고 설립지역에 6개월 이상 주소가 거소가 있거나 생업에 종사하는 자이어야 함
사업계획	- 사업계획의 타당성 : 사업개시 후 3년간의 당기순이익 등 수익전망을 검토하고, 타 금융기관과의 업무구역 중복으로 발생할 과열경쟁여부 검토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공헌 등 지역공동체 기여 검토
전문인력	- 새마을금고법 제21조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할 것 - 중앙회가 실시하는 금고 설립에 필요한 교육과정 이수 (신규설립 예정금고의 임직원은 30시간 이상 이수)
물적설비	- 사무실 전용면적 확보 및 편리한 위치 입지 검토 - 방호시설 및 전산설비(중앙화와 호환 가능한 전산시스템 구비)
영업범위	- 지역금고 : 시·군·구 단위의 행정구역 - 직장금고 : 직장 사업체 경내
인가기준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처리기준

출처 :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처리기준」 중 법령에 따른 요건을 살펴보고 연구자가 작성함

1-4-2 검토

- 새마을금고는 설립목적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서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공헌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에서 사회적새마을금고를 설립하였을 때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사업진행이 원활할 수 있음. 다만 사업계획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지역사회 공헌사업은 문화 복지 후생사업, 회원에 대한 교육사업, 지역사회 개발사업(법 제28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의 사업)으로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보다 확장되어 사회적새마을금고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새마을금고는 타 금융기관과 다르게 행정안전부 소관이다보니 상대적으로 금융당국의 개입이 제한적임.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의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하도록 하고 있고(법 제74조 제1항), 중앙회의 특정 신용사업 부문의 경우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및 「한국은행법」 제11조에 따른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보지만 (법 제6조 제1항) 금고 및 중앙회에 대한 감독은 원칙상 행정안전부장관

의 소관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의 사회적 가치 창출 등을 목적으로 사회적새마을금고 설립이 보다 용이할 수 있음

-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새마을금고’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업무구역이 시·군·구 단위의 행정구역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제주도 전체에서 영업하기 위해서는 제주도 내 시장·군수·구청장간 협의를 통해 업무구역을 확장하여야 함
- 새마을금고는 중앙회를 거쳐 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의 의지가 있다면 신탁보다 도내 사회적새마을금고 설립이 용이할 수 있음. 그러나 신탁과 유사하게 설립인가신청을 위해서는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의견이 중요할 수 있음

1-5 특별법을 통한 사회적은행 설립 검토

- 현행법에 따라 사회적은행을 설립하는 것이 빠른 설립을 이끌 수 있으나, 사회적은행의 특수성에 맞게 법이 개정되거나 별도의 기준에 따른 특별법에 의해 설립이 가능할 수 있음
- 특별법 제정을 통한 사회적은행 설립은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간 및 재정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으나,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전문금융기관으로 설립목적부터 구축하여 운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은행의 최초 설립부터 확산까지 입법만 된다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특히 은행법상의 각종 규제 적용에 대해 특례를 둘 수 있고 사회적은행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음
- 과거 특별법을 제정하여 사회적은행과 유사한 금융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대부분 정부 출자 또는 기부금을 통한 여신만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수신이 가능한 은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그러나 별도의 은행을 설립하여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금융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① 2007년 「서민은행법안」(심상정의원 대표발의)

-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에게 금융지원과 금융혜택을 제공하는 은행임(서민은행법안 제1조, 제2조). 서민은행의 자본금은 1조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하도록 하고 있어 국책은행의 성격을 가짐(안 제3조, 제6조)
- 서민은행은 자본금과 적립금, 서민은행채권의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안 제21조), 긴급 생활안정자금, 학자금의 무담보·무보증 소액용자, 영세사업자에 대한 시설 운영자금 등의 용자, 고금리 사채 이용자로 사채 상환을 통해 지출구조의 개선이 기대되는 자에 대한 용자를 업무로 함(안 제23조)

- 그 외 정부위탁사업을 업무로 하고 있으며 서민은행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정부가 이를 보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안 제30조) 정부 통제를 벗어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짐

② 2007년, 2008년 「사회책임연대은행법안」(박재완의원 대표발의(2007년), 김영선의의원 대표발의(2008년))

- 사회책임연대은행은 근로능력과 자활의지는 있으나 낮은 신용도와 담보력으로 금융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체적인 신용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은행을 말함(안 제1조)
- 신용등급이 아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사람,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사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및 사회책임연대은행 이사장이 추천하는 사람(안 제3조)으로 대상자를 구분함
- 사회책임연대은행은 금융기관의 출연금, 정부의 출연금,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품을 그 수입으로 하고 있고(안 제9조, 제18조), 이외에 정부가 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은행에 출연, 금융기관도 휴면예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은행에 출연금을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안 제19조) 수신이 불가하여 은행으로 보기는 어려움
- 특별법으로 사회적은행을 설립할 경우 정부 출자를 고려할 수 있으나 방글라데시 그라민은행처럼 정부의 개입이 높을 경우 자율적인 경영이 어려워 사회적은행의 독립성과 본질이 위협받을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출자를 최소한으로 하거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사회적은행이 설립될 필요가 있음
- 또한 사회적은행만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법에서 최저자본금 및 BIS비율 등 자산건전성 규제 요건을 은행법보다 완화하고 실물경제자산 투자, 투명한 정보공개 등 해외 사회적은행이 가진 특징들을 설립 및 유지 요건으로 정하여 차별성을 가져야 함

2. 운영을 위한 실행방안

2-1 사회적 가치평가

2-1-1 개념 및 접근 방법

- 현재 사회적 가치(social value) 또는 사회적 영향력(social impact)에 대한 명확한 정의, 범위, 내용에 대한 합의는 부재하며 사회적 가치 개념의 추상성으로 인해 사회적 가치 측정지표에 대한 연구결과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음. 따라서 사회적 가치 측정에 대한 합의된 지표는 아직 없으며 여전히 개발중에 있어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영역임
 - 일반적으로 사회적 가치는 경제적 가치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공공성이라는 가치를 본질적으로 내재하고 있음. 그러므로 다수의 연구자들이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일반적 합의가 부재하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회적 가치의 개념정의를 통해 사회적 가치는 개인을 초월하여 공동체의 이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한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음

〈표 10〉 사회적 가치(영향력)의 다양한 정의(예)

용어(연구)	정의
Social impact (Burdge and Vanclay, 1996)	사회적 영향은 사람, 조직, 사회가 공존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일하고, 즐기는데 있어서 변화를 야기하는 공공 혹은 개인의 활동들의 결과
Social impact (Latané, 1981)	사회적 영향은 개인이 다른 삶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종류의 변화를 의미(생리적인 상태, 주관적 기분, 동기와 감정, 인식과 신뢰, 가치와 행동)
Impact (Clark et al., 2004)	어쨌든 일어났을 일을 초월하는 조직의 활동에 대한 결과로서 발생하는 총 결과의 정도
Social value (Emerson et al., 2000)	사회적 가치는 개인의 삶이나 전반적인 사회를 개선하려는 자원, 투입물, 프로세스, 제도 등이 합쳐져 창출되는 것
Social impact (Freudenburg, 1986)	어떤 활동의 결과로서 사회구성원의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결과나 효과
Social impact (Gentile, 2000)	비즈니스 활동과 사회 사이의 복잡한 상호의존성을 존중하고 반영한 사회적 관심
Social value (Kroeger and Weber, 2014)	사회적 개입으로 인해 개인들의 주관적인 행복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변화
Social impact (Stephan et al., 2016)	개인, 조직 및 환경의 광범위한 공동체에 의해 향유되는 친사회적 행동에서 비롯되는 유익한 결과

■ 사회적 가치 개념 정의의 두 가지 접근 방향

- 일반적으로 사회적 가치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접근법으로 정의 내리고 있음. 하나는 결과론적 접근법으로 외부효과(externalities)를 중심으로 정의내리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과정(활동)중심으로 정의내리는 방법임
- 가장 일반적인 접근법 중의 하나이며 경제적인 접근법이라 할 수 있는 외부효과(externalities) 중심은 결과론적 접근법의 시각으로 개인, 기업 등 어떤 경제주체의 행위가 다른 경제주체들에게 기대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발생시키는 효과를 의미함
- Santos(2012)는 외부효과를 조직이 수행하는 객관적인 기능을 초과하는 경제적 활동으로부터 생성된 결과물로 보고 있음. 또한 Schuler and Cording(2006)은 조직차원의 사회적 성과를 일반적으로 사회적 또는 제3자 효과를 가진 자발적 사업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음
- 구체적인 예로는 사회적 가치를 가난과 갈등을 줄이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Tobias, Mair, and Barbosa-Leiker, 2013), 어떤 특정 결과물을 양산해낼 때 비로소 사회적 가치가 실현된다고 보는 관점임
- 과정(활동)중심의 접근법의 사회적 가치 및 성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원칙(principles of social responsibility), 사회적 대응 과정(processes of social responsiveness), 정책들(policies), 프로그램들(programs), 가시적인 성과들(observable outcomes)로 구성된다고 보는 것임 즉, 외부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관련 원칙을 세우고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등의 과정도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으로 보는 시각임
- 예를 들어, Peng and Yang(2014)은 사회적 가치에 기업이 공해저감 장치에 투자하는 활동을 포함시키고 있음. 이러한 활동은 단기간의 가시적인 결과를 창출하지는 못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공해를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사회적 편익(social benefit)을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임. 즉, 가시적 결과와 함께 이러한 친사회적 활동과 원칙들 또한 사회적 가치창출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2-1-2 사회적 가치 측정방식

- 사회적 가치 측정을 위해 다양한 기관들이 자신들의 측정목적에 반영하여 측정지표들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정부가 개발한 대표적인 지표만 제시하였음

① SVI(Social Value Index)

- 정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지원정책 시행 시 기본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지표로서 사회적 성과, 경제적 성과, 혁신 성과 관점에서 총14개 지표를 활용하고 있음
-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 지표는 기본적이면서 범용적 성격이 강해 사

회적 은행이 그대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표 11〉 SVI, 사회적가치지표 총괄

관점	범주	영역	측정지표	배점
사회적 성과 (60)	조직 미션 (7)	사회적 미션(7)	1. 사회적 가치 추구 여부	2
			2. 사회적 성과 관리체계 구축여부	5
	사업 활동 (35)	주 사업 활동의 사회적 가치(15)	3.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비계량 지표)	15
			4.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력 수준	5
			5.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5
	조직 운영 (18)	사회적 목적 재투자(10)	6. 사회적 환원 노력도(비계량 지표)	10
			7. 운영의 민주성(5)	5
			8. 근로자 지향성(13)	8
	경제적 성과 (30)	재정 성과 (30)	고용창출 및 재정성과(25)	9. 근로자 역량강화 노력
10. 고용성과				10
11. 매출성과				10
노동성과(5)			12. 영업성과	5
			13. 노동생산성	5
혁신 성과 (10)	기업 혁신 (10)	기업 활동의 혁신성 (10)	14. 혁신노력도(비계량 지표)	10
계			14개 지표	100

출처: 2020 사회적가치지표 활용매뉴얼,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 2020

② K-ESG 지표 주요 내용

- 정부주도로 우리나라 기업이 안정적으로 ESG경영을 도입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발됨
- 4개 영역, 27개 범주, 61개 기본 진단항목으로 구성됨
- 이 지표는 기업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성격이 강하지만 ESG 평가나 검증 기관도 원하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들 기관이 필요로 하는 기본 평가 항목을 제시하고 있음

〈표 12〉 K-ESG 지표

구분	측정지표		
정보공시 (5개 문항)	ESG 정보공시 방식	ESG 정보공시 주기	ESG 정보공시 범위
	ESG 핵심 이슈 및 KPI		ESG 정보공시 검증
환경 (17개 문항)	환경경영 목표 수립	환경경영 추진 체계	원부자재 사용량
	재생 원부자재 비율	온실가스 배출량 (Scope1+Scope2)	온실가스 배출량(Scope3)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에너지 사용량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용수 사용량	재사용 용수 비율	폐기물 배출량
	폐기물 재활용 비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환경 법/규제 위반	친환경 인증 제품 및 서비스	
사회 (22개 문항)	목표 수립 및 공시	신규 채용	정규직 비율
	자발적 이직률	교육훈련비	복리후생비
	결사의 자유 보장	여성 구성원 비율	여성 급여 비율 (평균급여액 대비)
	장애인 고용률	안전보건 추진체계	산업재해율
	인권정책 수립	인권 리스크 평가	협력사 ESG 경영
	협력사 ESG 지원	협력사 ESG 협약사항	전략적 사회공헌
	구성원 봉사 참여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개인정보 침해 및 구제
	사회 법/규제 위반		
지배구조 (17개 문항)	이사회 내 ESG 안건 상정	사외이사 비율	대표이사외 이사회 의장 분리
	이사회 성별 다양성	사외이사 전문성	전체 이사 출석률
	사내 이사 출석률	이사회 산하 위원회	이사회 안건 처리
	주주총회 소집 공고	주주총회 집중일 이회 개최	집중/전자/서면 투표제
	배당정책 및 이행	윤리규범 위반사항 공시	내부 감사부서 설치
	감사기구 전문성 (감사기구 내 회계/재무 전문가)	지배구조 법/규제 위반	
4개 영역, 총 61개 진단항목			

출처: 정부의 K-ESG 가이드라인, 산업통상자원부(2021)

2-1-3 제주형 사회적은행의 사회적가치 측정

- 사회적은행은 지속경영을 위한 수익 창출이라는 경제적 가치와 공동체의 사회적 가치를 조화시키는 공유가치 창출을 목표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자금 조달, 대출고객의 심사나 리스크 관리, 자산운용에 있어서 다양한 의사결정을 할 때 정해진 사회적 가치 기준에 따라 거래 전 이를 확인하고 실행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용이할 것임
- 제주형 사회적은행의 사회적가치 측정 지표는 사회적금융의 미션과 비전을 실행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지표들을 재구성하여 활용, 제주만의 독자적인

가치 척도와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활용중인 사회적 가치 측정지표 pool
- 금융산업 특성 반영 지표 pool
- 정부의 K-ESG 가이드라인 지표 pool
- 주 상황 반영 지표 pool
- ESG평가 지표 pool
- 예: DJSI(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ESG Indexes, TCFD (Task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 ESG 분야에서 S분야는 지역사회, 공급망 투명성, 고객만족, 건강, 안전, 정보보호와 같은 분야로 사회적은행이 집중하고 있는 사회적가치에 가깝다고 판단됨. 하지만 제주지역은 기후변화, 자연자원, 환경오염, 물, 토양, 청정에너지, 종다양성과 같은 E분야도 많은 가치를 지니고 있어서 이에 관련된 기준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한편 G분야는 사회적은행의 운영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사회 독립성, 지배구조, 기업윤리, 반부패, 공시 등 시장감시 기능등의 강화가 사회적은행 운영의 원칙과 주요 규정에 포함되어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이러한 평가방식에 따라 사회적은행에서 창출한 사회적 가치가 화폐적 가치로 인정받고 그 가치만큼 시장에서 통용되어 활용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한 것임(예:탄소배출권, 탄소크레디트의 거래시장 등)

2-2 자금조달 방안

① 자본금 규모 산정

- 제주형 사회적은행의 설립에 따른 최소 자본금은 설립될 은행이 어떤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가에 따라 정해짐. 하지만 현실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은행법, 인터넷은행법, 저축은행법으로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각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상 최소 요건은 다음과 같음
 - 은행법 : 1,000억 원
 - 인터넷전문은행법 : 250억 원
 - 저축은행법 : 40억 원 (특별자치도의 경우)
 - 신탁법 : 지역신탁 2억 원(특별자치도의 경우)
 - 새마을금고법 : 지역금고 3억 원(특별자치도의 경우)

- 하지만, 예를 들어 저축은행법으로 설립한다고 가정할 때 최소 자본금 규모는 40억이지만 금융당국에서 저축은행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다음과 같은 지표를 충족하려면 대략 8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안정적인 초기 금융상품의 운영 및 경영안정화를 위해서는 100억~150억원의 최소 자본금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신용리스크 관리
 - 대손충당금 설정
 - BIS자기자본 비율
 - 자산건전성 분류

② 자금 확보 방안

- 설립 관련 근거법에 따라 확보 자금이나 방법이 정해져야 하겠지만, 최초 설립자본금 납입을 위한 자금 확보 방안은 크게 자체적인 자본 조달, 주주에 의한 자본조달, 연기금의 출자, 도내 대기업, 공사의 출자, 도민에 의한 출자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자체적인 자본 조달 : 가칭 제주형 사회적은행 설립자가 자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방법이 있고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지는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판단됨. 하지만 자체 자금으로 사회적은행을 설립하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다소 낮다고 판단됨
- 주주 조달 : 사회적은행 은행 설립자 이외의 다른 개인 또는 법인 등을 주주로 확보하여 자본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도내를 벗어나 다수의 법인, 기관, 시민을 대상으로 자본금 조달이 가능함. 아울러 제주 기반 대기업, 공사, 기관, 도민도 주주로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도민 참여를 위하여 도민 대상 국민주 방식으로 모금도 가능하나 향후 도에 미칠 장단점에 상세한 고려가 필요함
- 기관 출자 : 연기금이나 벤처투자기금 등 민간 기금에서 출자의 형태로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도 가능함.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회적목적이 큰 제주형 사회적은행에 출자를 고려할 연기금은 많지 않다고 판단됨. 다만 시중은행이고 본점이 제주에 소재한 제주은행의 참여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지역 전략적 투자가 : 제주 기반의 대기업 및 공사가 출자를 통해 참여하여 제주 지역 사회적가치 증대와 상생 및 사회공헌의 역할로 참여가 바람직함. 구체적으로는 넥스코리아, 카카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호텔신라와 같은 대기업 및 기관의 출자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2-3 고도화 상품 운영 방안

① 여신 상품의 고도화

- 사회적은행의 가치와 미션에 따라 사회적경제 영역에 대한 자금공급 시 성숙기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은 시중 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운영하되 관계형 금융 방식(사전 심사보다 사후 모니터링 확대) 운용으로 리스크 경감과 함께 적절한 수익 달성으로 은행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도 등 지방자치단체, 신용보증기관 및 사회경제적기관의 보증 확대로 은행의 대손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이를 통한 자금공급을 확대하여 금융의 선순환을 담보토록 운영함
- 자금 공급 대상 중 기업에 대한 평가와 분석은 좀 더 명확한 기준으로 성장단계와 산업별로 수행하여야 함.
 - 예비창업기업, 창업기업, 성장기 창업기업, 성숙기 창업기업 등 성장 단계별로 기업의 평가 및 분석 항목을 정함
 - 아울러 농식품어업, 제조유통업, 서비스업, 첨단 산업 등 산업의 구조와 속성에 따라 기업의 평가 및 분석 항목을 세분화하여 자금 공급 금액과 금리등을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
- 도의 미래 산업 전략에 맞추어 미래지향적이며 가치지향적인 분야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함을 원칙으로 함
 - 유기농 및 자연보존 농축수산업 분야와 가공분야 : 기존 농식품축수산업의 고도화에 관련된 기업
 - 신재생 에너지 분야 : 풍력발전, 조력발전,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 분야의 관련 기업
 - 의료, 바이오, 헬스 분야 :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수명 연장 및 삶의 질 향상 관련 기업
 - 친환경 교통 분야 :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 저탄소 친환경 교통 관련 서비스 제조 관련 기업
 - 지속가능한 거주를 위한 주택 등 부동산 분야 : 제로 에너지 주택, 친환경 주택 등 지속가능성을 높인 부동산 관련 기업
 - 기타 지속가능 및 순환경제 분야 : 폐기물 재활용 및 자원 재생, 업사이클링등 순환경제에 관련된 기업

② 수신 상품의 고도화

- 모든 수신 상품은 수신 자금의 용처와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여신이나 투자를

통해서 창출되는 사회적 임팩트를 예금자에게 주기적으로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가치(이자)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같이 제시하여 예금자의 참여 확대를 추구함

③ 제주형 혁신 펀드 상품의 운영

- 제주 산업의 고도화 및 미래 성장 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한 혁신펀드 구축 및 앵커 LP 출자로 민간 투자자의 LP 매칭 참여 유도 등 투자 펀드 규모의 확대와 투자 주 목적 달성 성공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통한 피투자기업의 가치 상승 및 적시 회수로 투자 자금의 운용 효율성을 극대화 함
- 제주형 사회적은행이 출자하는 혁신펀드는 제주 지역 혁신 창업기업을 우선적으로 주목적 투자 대상으로 설계 하고 국내 뿐 아니라 글로벌 성장을 계획하고 있는 우수 창업기업을 위한 중장기 인내자본의 역할 및 앵커 자본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매칭 펀드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
-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과 같은 인증 사회경제적 조직 전용 투자펀드도 사회적은행이 운영하는 일반 펀드와 별개로 구축하여 좀 더 사회적 가치 추구에 미션이 있는 기업들을 집중해서 선별적으로 지원토록 함

2-4 기타 운영 방안

① 점포의 최소화 및 비대면 거래 확대

- 제주형 사회적은행은 관계형 은행을 지향하므로 일정 목적의 대면 거래를 위한 점포는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임. 그러나 통상적인 은행거래는 모두 온라인 은행거래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 입, 출금 등 은행거래는 모두 인터넷은행 방식으로 무점포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자동화 시스템을 정교히 하고 효율적인 선택 방식이 허용되어야 함(예 전산기기, 운영, 설치 환경에 관한 사항 등)
- 하지만 대출이나 투자를 위한 상담과 사회적가치, 리스크평가 등 비대면 거래를 위한 지점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기존 은행의 지점과 같은 형태보다는 지역 거점 상담센터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제주, 서귀포 시내 및 동, 서부 설치가 바람직할 것임

② 제주형 사회적은행 신용평가 시스템 구축

- 제주 지역의 오랜 전통인 관계 사회의 특성을 감안해서 신용도와 사회적가치에 기반한

대안 신용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실제 신용평가와 리스크 관리의 기존 대안신용 전문 평가기관과 전략적인 협업을 통해서 모델의 고도화 및 성공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③ 기타 운영 실행 방안

-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을 약 1%로 시중은행보다 다소 높게 설정하여, 은행 상품의 주목적 달성을 용이케 하고, 좀 더 많은 금융소비자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접근성을 향상하고자 함. 이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사회적가치 추구에 집중할 수 있게 됨
- 사회적은행의 저금리 운용과 저금리조달을 해결하기 위한 자율적 여신 의사결정권 확대 시스템구축과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전문성 있는 인력의 확보와 양성이 필요함
- 준법감시강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회적가치를 반영하는 새로운 상품들의 개발과정에 서부터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는 상품 개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¹¹⁰⁾

3. 설립 추진 전략

3-1 핵심 가치

제주형 사회적은행은 농업, 관광 등 기존 제주지역 산업의 고도화와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같은 미래 산업의 적극 육성을 선도하는 목표를 가지고 급증하는 도내 사회적금융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의 재정자립도를 증대시키고, 지역 내 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아울러 추구하고자 함

- 이러한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주형 사회적은행은 ① 고객 존중, ② ESG가치 중시, ③ 관계와 소통 기반 운영, ④ 혁신 기술 추구, ⑤ 지속가능성 추구하고자 함

① 고객 존중

- 제주형 사회적은행의 고객은 예금자, 대출자, 투자회사, 투자기업, 종업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내포하고 있음. 예금자만을 고객으로 삼는 기존 은행의 단점을 극복하여 모

110) 사회연대은행, “사회적은행 설립 연구보고서- 작은 은행, 큰 금융-”, 2022.

든 시장참여자가 은행의 가치를 창출하는 고객으로 공정하고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함

② ESG가치 중시

- 제주형 사회적은행은 인류가 공동으로 추구하는 가치로 부각되고 있는 환경, 사회, 거버넌스의 가치를 중시해야 함. 이에 따라 친환경기술, 신재생에너지, 순환경제, 의료, 헬스, 인권, 기업윤리 등과 같은 가치에 기반한 고객과 거래하고, 공매도나 투기와 같이 과도한 수익추구를 배제함
- 창출되는 ESG가치를 정확히 산출, 평가하여 제주형 사회적은행을 통해서 창출되는 ESG가치가 우리 사회에 ESG가치를 확산하고 고도화하는 역할을 하고자 함. 또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등과 협력하여 이러한 ESG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교환하거나 거래하는 시스템도 실현하도록 함

③ 관계와 소통 기반 운영

- 제주형 사회적은행은 관계와 소통에 기반한 운영을 중요한 가치로 여김. 고객들 간 또는 고객과 사회의 이해관계자와 투명하고 정확한 소통을 추구해야 함. 이를 위해 관계에 기반한 금융상품을 운영하고 모든 은행의 거래와 운영은 투명하게 이해관계자에게 소통되고 모니터링 되어서 신뢰 수준을 높여야 함
- 이를 통해 은행의 고객들과 이해관계자들이 사회의 건강한 발전과 변화를 이끌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고자 함. 또한 은행의 이사회, 감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직원 등의 참여도 적극 고려해야 함

④ 혁신 기술 추구

- 제주형 사회적은행은 모바일, 인터넷 등 정보기술에 기반한 운영을 통해 은행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함. 이를 위해 은행 운영을 위한 지점 설치를 최소화하고 관계금융을 위한 대면 센터 위주로 운영함

⑤ 지속가능성 추구

- 제주형 사회적은행은 안정적인 수익 추구하고 레버리지 비율로 재무적인 탄력성을 추구함. 이를 위해서 금융서비스의 고도화를 추구하고, 아울러 타 금융기관과 전략적인 협업을 통해서 상품을 고도화하고 규모 확대를 꾀함
- 파생과 부동산 등 불확실한 상품운영을 지양하고, 실물경제 위주의 상품운영, 생산적이고 미래가치 지향의 고객과 거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또한 대안신용평가를 결합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정확한 위험관리를 통해서 외부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3-2 법률적 환경에 따른 검토

은행법, 인터넷전문은행법, 신탁법,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특별법을 통한 사회적은행 설립방안을 검토한 결과, 각 법으로 설립하였을 때 한계점을 제시함

① 은행법상 제주형 사회적은행을 설립할 경우

- 전국은행의 경우 최저자본금을 1천억 원 이상 마련하여야 하지만, 지방은행으로 설립할 경우 최저자본금이 250억 원 이상이면 됨. 제주도 내로 영업구역을 한정한다면 지방은행으로도 설립 가능함. 다만 이렇게 되면 피투자기업과 투자 프로젝트가 제주지역 내로 한정되어서 향후 확장성에는 한계를 가지게 될 것으로 판단됨
- 설립 당시의 최저자본금 외에도 은행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최저자본금을 포함하여 적절한 자금조달방안 및 추가적인 자본조달계획이 중요함. BIS비율 등 자산건전성 유지를 위한 규제요건이 엄격함
 -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자기자본비율 규제, 유동성비율 규제, 예대율 규제, 자산건전성 분류 규제 등을 적용받게 되는데, 제주형 사회적은행 설립 시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 최저자본금 요건 외에는 은행업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법 개정 없이도 감독규정 개정 또는 특례규정 마련을 통해 사회적은행 설립이 가능함. 자금조달방안, 사업계획, 전문인력 등 사회적은행은 일반은행과 달리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기 때문에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하지만 매우 보수적인 금융당국이 감독규정을 특정 은행을 위해서 완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됨
- 국내 은행의 경우 해외에 비해 설립 및 유지를 위한 최저자본금 요건이 높아 신규 은행 설립이 어려움. 그러나 최저자본금 요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은행법 개정이 필요하고 실제로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에도 최저자본금 요건을 완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산체계, 인력 구성 등 물적설비 구축을 위해 납입자본금이 3천억 원으로 시작한 바 있음.¹¹¹⁾ 그러므로 은행법 개정 없이 사회적은행을 설립하고 안정적인 설비 구축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분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제주 민간 기업들의 출자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가 필요함

111) 카카오 보도자료, “카카오뱅크,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 예비인가 획득”, 2015.11.29.

- 또한 일반은행으로 설립될 경우 ‘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제주 내 여수신을 넘어 전국적인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자금이 수신될 수 있어 향후 사업 확대 및 은행의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 유리한 점으로 작용할 것임
- 설립 및 유지조건 등이 엄격하지만, 은행법상 사회적은행은 은행의 고유업무 외에도 겸영업무, 부수업무 등 은행의 모든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다만 제주형 사회적은행은 제주지역 순환경제를 위한 사회적 가치 있는 사업 및 기업을 발굴 및 투자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은행의 모든 업무를 영위할 필요는 없음. 그러므로 특화된 목적에 맞는 별도의 업무범위를 정하여 보다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는 방안도 가능함
 - 최근 정부가 은행권의 고금리 이자수익으로 인한 과점구도에 따라 ‘상생금융’ 정책을 강조하고 있으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를 출범하여 은행업 ‘스몰 라이선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¹¹²⁾ ‘스몰 라이선스’가 도입될 경우 사회적은행의 설립이 보다 용이해질 것임

② 인터넷전문은행법상 제주형 사회적은행을 설립할 경우

- 은행법과 대부분 유사하지만, 지점망 없이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설립 시 점포의 최소화 및 비대면 거래를 통해 비용 절감이 가능함
 - 사회적은행의 경우 관계금융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비대면 거래에 대한 우려가 가능하나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거점 지역 상담센터를 운영한다면 충분히 비대면으로도 사회적은행의 차별성을 가질 수 있음
-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설립 시 최저자본금 및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 가능비율 조건이 일반은행보다 완화되어 제주지역의 민간 및 공공 경제주체들의 출자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음

③ 상호저축은행법상 제주형 사회적저축은행을 설립할 경우

- 은행법에 비해 최저자본금, 주주구성계획, 자금조달방안 등 진입규제가 낮아 설립이 보다 용이함. 다만 ‘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상호저축은행’ 또는 ‘저축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함
 - 저축은행은 일반적으로 중저신용자들을 주고객으로 하며 예대금리차가 크기 때문에 초기 제주형 사회적저축은행이 설립되었을 경우 사회적 가치 등을 홍보하고 고객을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112)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제1차「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개최”, 2023.02.22.,

- 전문인력에 대한 기준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과정이나 연수과정을 이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사회적저축은행의 경우 사회적금융에 대한 전문교육 및 연수를 이수한 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은행법과 유사하게 설립을 위한 세부 기준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저축은행 설립 시 별도의 기준을 감독규정에서 마련하여야 하며, 금융당국의 설립 의지가 중요함
-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이미 과공급 상태이다보니 신규 설립의 가능성은 낮아 설립할 경우 인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 상당한 재원이 필요한데 이 경우 제주도의 재정부담이 높아 민간투자자 유치가 중요함

④ 신탁법상 제주형 사회적신탁을 설립할 경우

- 사회적신탁의 경우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은행, 저축은행보다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제주도민 조합원들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설립이 된다면 목적에 맞는 사업 운영이 원활하게 결정되고 진행될 수 있음
- 다만 사회적신탁 설립을 위해서는 신탁중앙회를 거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신탁중앙회와 금융위원회에 제주형 사회적신탁이 예금자보호 및 제주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필요성에 대해 설득하여야 함
- 신탁법에 따라 ‘신탁협동조합’, ‘신탁’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설립하게 된다면 사회적신탁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함
- 현재 제주도 내 신탁협동조합이 29개에 해당하는 만큼 제주형 사회적신탁 설립 시 기존 신탁들과의 충돌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⑤ 새마을금고법상 제주형 새마을금고를 설립할 경우

- 새마을금고는 타 금융기관과 다르게 행정안전부의 인가 및 감독을 받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개입이 제한적임. 또한 2020년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새마을금고 신규 설립 시 행정안전부가 아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주도 내 설립의지가 있다면 제주형 새마을금고 설립이 가능함. 다만 새마을금고 역시 신탁과 유사하게 중앙회장을 거쳐 도지사의 인가를 받기 때문에 중앙회와의 협의가 필요함
- 새마을금고중앙회 내에서 사회적금융 및 ESG금융을 실천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만의 사회적금융 전문 새마을금고에 대해 중앙회의 의견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설립이

유 및 새마을금고에 가져올 영향에 대해 설득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재 제주도 내 새마을금고가 42개가 되는 만큼 제주형 사회적새마을금고 설립 시 기존 새마을금고와의 차별성, 업권의 충돌 등이 문제되지 않는지 검토하여야 함
- 제주형 사회적새마을금고의 경우에도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새마을금고’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함

⑥ 특별법을 통해 제주형 사회적은행을 설립할 경우

- 제주형 사회적은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설립 초기부터 사회적은행에 특화된 조건에 맞춰 설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나, 별도 입법까지 상당한 시간과 재정 부담이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 특별법 제정 이후 제주도 사회적은행 설립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제주형 사회적은행만의 특성을 세부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 특별법에 의한 사회적은행 설립은 현행 금융 관련 법상의 여러 제한요소를 뛰어 넘을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나, 정치권 등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설립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사항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어야 함. 이런 연유로 과거 몇 차례 특별법 시도가 무산된 점은 극복해야 할 과제임

⑦ 금융당국과의 협의 필요

- 설립 인가의 양적 요건을 갖추면 사업계획서상 질적 요건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금융당국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함. 그러므로 사회적은행 설립을 통해 창출할 사회적 가치, 지속적인 사업 운영 계획 등 사회적은행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당국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함
 -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에도 도입 당시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해 인가심사 시 별도의 고려사항으로 두었기 때문에 사회적은행의 경우에도 이러한 고려사항을 둔다면 은행법, 인터넷전문은행법 등으로 충분히 설립 가능함
 - 최근 일반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의 신규설립이 없어 사회적은행 또는 사회적저축은행의 설립으로 발생할 사회적 가치, 효과 등을 설득하여야 함
- 또한 설립 인가기준 외에도 계속하여 은행을 유지하기 위한 감독규제도 받아야하기 때문에 법상의 요건 외에도 지속적으로 금융당국의 권고사항을 지켜야 함. 그러므로 금융당국이 사회적은행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
- 최근 은행, 저축은행, 신탁, 새마을금고 등 이미 과포화상태이고 제주지역에도 저축은

행, 신탁, 새마을금고 등이 상당수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형 사회적은행(저축은행, 신탁, 새마을금고) 설립이 기존 금융기관과 차별성을 가지며 사회적 가치 위주의 사업 및 기업에 투자한다는 점을 명확히 홍보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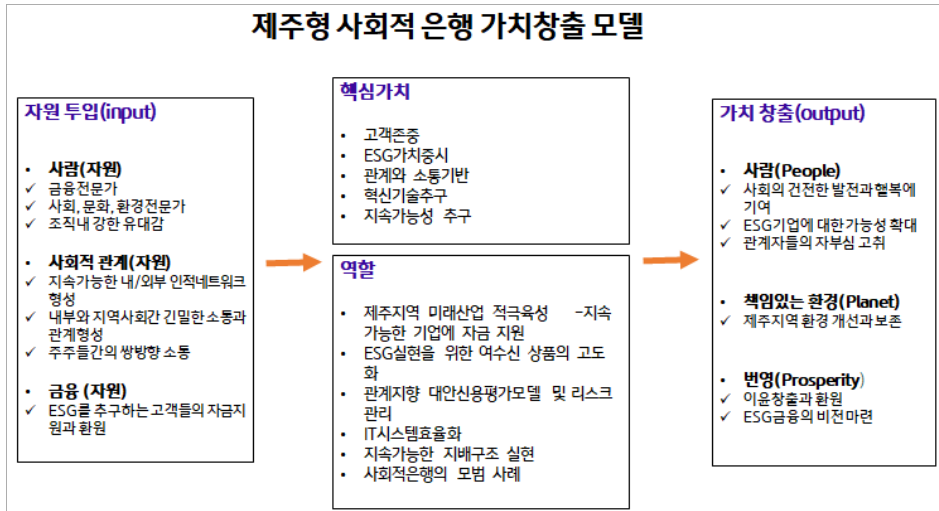
3-3 설립 추진 방향성

3-3-1 가치창출 비즈니스 모델

■ 제주형 사회적은행은 기존 금융기관들의 ESG와 연계된 여·수신 상품을 출시하여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차원 이상으로 금융상품 뿐 아니라 자금조달과 자금운용방안부터 리스크 관리까지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방향에 따라 수익창출 모델이 마련되어야 함

- 사람, 사람들이 살아가는 환경 뿐 아니라 제주지역의 번영을 가져다 줄 수익창출 모델을 토대로 장기적 관계 형성을 통해 지역사회와 실물경제에 기여하며 투명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도록 해야 함
-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가치창출 모델을 개발하고 연차별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함

〈그림 1〉 제주형 사회적은행 가치창출 모델



3-3-2 추진 방향성

① 제주 미래 성장 지향 사회적은행

■ 제주지역은 천연자원과 관광문화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이를 바탕으로 하는 미래 성장

사업 육성에 최적지임. 각 산업별 특성을 감안한 사업모델 추구로 제주 지역 경제 고도화 기여하고자 함. 관광과 농식품축어업은 기존 사업을 고도화하고, 신재생 및 바이오와 같은 미래산업은 육성을 가속화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선도하는 자금을 집중 공급하는 투·융자 상품을 구성하도록 함

- 첨단 관광 산업 분야 : 해양레저, 에코투어, 복합리조트 등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디지털 기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차별적인 상품개발과 인프라 서비스 확대
- 청정 에너지 산업 분야 : 해상풍력 및 태양열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자연환경과 기상조건을 가지고 있는 제주에서 혁신적인 청정 에너지 기업 육성이 바람직
- 스마트 농축어업 산업 분야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 기술 개발과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품질이 우수한 제주의 농축산업과 식품의 고도화가 가능함. 이를 통해 제주 1차산업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고부가화
- 바이오 의료 산업 분야 : 다양한 식물과 동물이 존재하는 지역으로, 자연의 풍부한 생태계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 의료 산업 발전에 유리한 상황

② 제주 소셜 임팩트 지향 사회적은행

- 불평등 해소, 지역 고유 문화 계승 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소셜 임팩트를 평가하고, 측정, 관리 시스템 기반을 구축함. 이를 위해서 제주 지역의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사회적은행 전용 사회적 가치체계를 구성하고 평가 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제주 기업의 사회문화적인 가치와 소셜임팩트를 측정하고 공유하여 제주 사회적가치를 증대시키도록 함
- 기후변화 대응, 탄소 중립, 환경 등 환경적 가치를 적극 추구하는 스타트업과 벤처를 육성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함.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K-Taxonomy에 기반한 탄소 중립 금융 상품을 개발 및 운영함

③ 제주 관계 지향 사회적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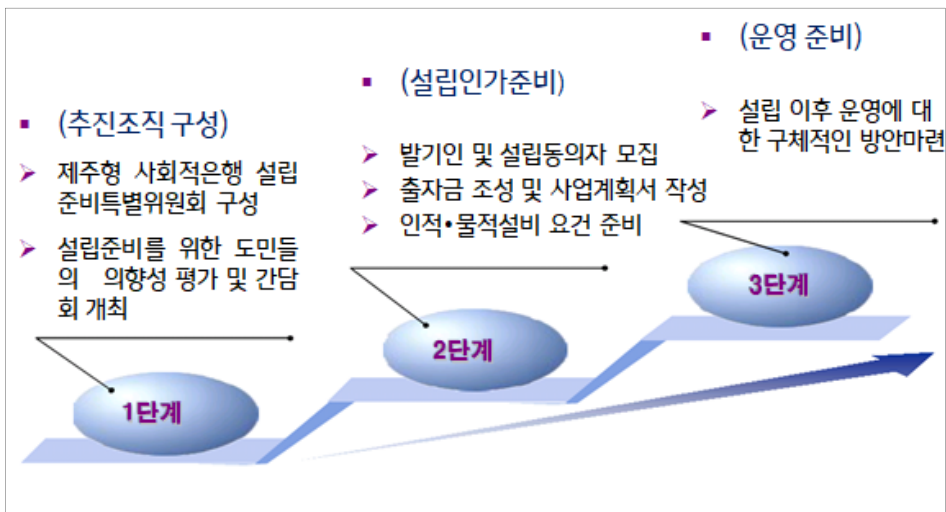
- 제주 지역의 강한 사회적 연대를 반영한 관계 금융 모델을 통해 기존 금융기관 및 신용평가기관의 평가 체계를 보완하고자 함. 이를 바탕으로 저신용, 무담보 기업들도 소셜임팩트와 대안 신용 평가 모델로 평가하여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함
- 제주형 사회적은행은 기존 제주 시중은행, 비은행 금융기관과의 금리나 상품경쟁이 아닌 상호보완 금융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하여 제주 금융기관과의 파트너십 체결로 차별성 있는 전문 리스크 관리시스템을 협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④ 제주 지역 ICT 대기업과의 협력으로 은행 운영시스템(IT 시스템) 효율화

- 제주형 사회적은행은 관계형 금융기관을 지향하지만 인력 등 은행 운영비용의 최소화를 위해서 모바일, 인터넷 등 정보기술 활용이 매우 중요함. 다만, 이러한 정보시스템 개발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제주지역의 ICT 대기업과의 전략적 협업(기부 또는 현물 출자)을 통해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은행 전산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자 함

3-3-3 설립준비를 위한 실행단계

〈그림 2〉 설립준비를 위한 실행단계



4. 요약 및 시사점

본 절에서는 제주지역 사회적은행 설립을 위한 법·제도적 검토와 운영을 위한 실행방안, 설립추진전략에 대해 살펴봄

- 제주지역 사회적은행 설립을 위한 법·제도적 검토를 한 결과 은행법, 인터넷전문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신탁법, 새마을금고법, 특별법을 통해 설립이 가능함. 그러나 각 법마다 사회적은행 설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상이하여 이를 검토하였음
 - 은행법에 따라 사회적은행을 설립할 경우 가칭 사회적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나 다른 법에 의해 설립될 경우는 가칭 사회적저축은행, 사회적신탁, 사회적새마을금

고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함

- 은행법상 자산건전성 등 규제요건이 엄격하고 저축은행법이나 신탁법의 경우 그 요건이 보다 완화되어 있지만, 실제로 금융당국에서는 선제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자본비율 등 권고 기준을 법 상 기준보다 높게 두고 있다는 점에서 설립 이후에도 은행으로서의 예금자보호, 신용질서 유지 등 은행의 사회적 역할이 중요함
 - 해외 사회적은행의 경우 대부분 현행법으로 설립되어 일반 은행과 같은 설립 및 규제요건을 갖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국내에서도 설립요건을 갖추어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는다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는 사회적은행이 단순히 사회적 가치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적 수익을 동시에 창출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
- 다음은 제주형 사회적은행 운영을 위한 실행방안으로 제주형 사회적평가 측정, 자금조달 방안, 고도화상품 운영방안, 기타운영 방안 등을 제안함
- 제주형 사회적은행의 사회적가치 측정 지표는 사회적금융의 미션과 비전을 실행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해야 하므로 기존 국내외 다양한 지표들을 활용하여 제주만의 독자적인 가치 척도와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함
 - 자금조달방안으로는 제주형 사회적은행의 설립에 따른 최소 자본금은 설립될 은행이 어떤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가에 따라 정해질 것이며 자금 확보 방안도 설립 관련 근거법에 따라 확보 자금이나 방법이 정해져야 하겠지만, 최초 설립자본금 납입을 위한 자금 확보 방안은 크게 자체적인 자본 조달, 주주에 의한 자본조달, 연기금의 출자, 도내 대기업, 공사의 출자, 도민에 의한 출자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고도화 상품운영을 위한 방안은 도의 미래 산업 전략에 맞추어 미래지향적이며 가치지향적인 분야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금 공급 대상 중 기업에 대한 평가와 분석은 좀 더 명확한 기준으로 성장단계와 산업별로 수행하여야 함. 또한 모든 수신 상품은 수신 자금의 용처와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여신이나 투자를 통해서 창출되는 사회적 임팩트를 예금자에게 주기적으로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가치(이자)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같이 제시하여 예금자의 참여 확대를 추구해야 함
 - 기타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점포의 최소화 및 비대면 거래 확대방안을 모색하되 대출이나 투자를 위한 상담과 사회적가치, 리스크 평가 등 비대면 거래를 위한 지역 거점 상담센터를 주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제주형 사회적은행 신용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저금리 운용과 저금리조달을 해결하기 위한 자율적 여신 의사결정권 확대 시스템구축과 이를 위한 전문성 있는 인력의 확보와 양성이 필요함
- 마지막으로 실제 제주형 사회적은행 설립을 위한 추진 전략으로 제주형 사회적은행의 핵심가치를 제안하고 법률적 검토를 통해 양적 조건과 질적 조건에 대한 제반 사항 등

다양한 여건들의 중요성을 제시함. 또한 이를 실제 실행하기 위한 가치창출 비즈니스 모델과 추진방향성, 설립준비를 위한 실행단계를 제안함

- 제주형 사회적은행은 농업, 관광 등 기존 제주지역 산업의 고도화와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같은 미래 산업의 적극 육성을 선도하는 목표를 가지고 급증하는 도내 사회적금융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의 재정자립도를 증대시키고, 지역 내 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이끌 것임. 아울러 고객 존중, ESG가치 중시, 관계와 소통 기반 운영, 혁신 기술 추구, 지속가능성 추구하고 같은 5가지 핵심 가치를 제안함
- 제주형 사회적은행은 각 법률상 필요요건을 갖춘다면 어떠한 형태로든지 설립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함. 다만 법률상 정량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사업계획, 자금조달방안 등 정성적 요건의 경우 평가자의 설립 의지가 인가에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으므로, 사회적은행의 차별성과 사회적 가치, 효과에 대해 금융당국(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야 할 것임
- 제주형 사회적은행은 기존 금융기관들이 ESG와 연계된 여·수신 상품을 출시하여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차원 이상으로 금융상품 뿐 아니라 자금조달과 자금운용방안부터 리스크 관리까지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방향에 따라 수익창출 모델이 마련되어야 함. 따라서 제주형 사회적은행은 제주의 미래 성장 지향, 소셜 임팩트 지향, 사회적 연대를 반영한 관계금융모델을 통해 관계 지향, 운영 최소화를 위한 제주 지역 ICT 대기업과의 협력으로 은행 운영시스템(IT 시스템) 효율화를 지향하는 방안을 제안함

IV.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 제주지역은 중소기업의 비중이 매우 높아서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관광, 농업, 유통 분야 이고 특히 환경, 지역 경제 및 고용 측면에서 사회적가치가 매우 높은 사회경제적 기업 임. 또한 첨단농업,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등 미래 산업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혁신기업의 유입이 크게 늘고 있어 사회적은행의 자금공급 효용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됨
- 하지만 기존 금융기관에 의한 금융 공급규모는 수요에 비해 매우 작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금융상품보다는 담보나 보증에 의한 소액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금융의 선순환으로 인한 가치 창출 기능이 매우 낮은 상황임. 이에 따라 제주의 특성인 관계형 사회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은행이 금융의 선순환 효과를 내기에 매우 좋은 기반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사회적은행은 대안 신용평가에 기반한 자금공급 및 안정적인 실물 자산 위주의 상품운영으로 해외에서도 수신이 계속 늘고 있음. 여러 번의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도 오히려 성장이 계속되고 있고, 최근 모든 분야에서 ESG가 확대되는 세계적 환경 변화에서 투명한 수신과 여신 및 상품은행은 매력적으로 인식될 것으로 예상됨
- 제주가 당면하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과 산업 고도화 및 미래 산업 기반의 신속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 펀드의 투자자금과 기존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금 공급보다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설립되는 제주형 사회적은행에 의한 금융서비스가 더 효과적으로 판단됨
- 특정 대기업이 대주주로 참여하는 모델 보다는 다수의 제주 기반 대기업(예를 들어 넥슨 코리아, 카카오, 호텔신라 등), 공사(예를 들어 제주국제자유도시센터(JDC),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등), 제주은행, 도민(필요 시) 이 함께 자본을 출자하여 설립하는 참여형 사회적은행으로 출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사회적은행의 안정적이고 규모 있는 자금공급을 통해서 기술혁신 기업 및 고부가 핵심 기술기업의 도 내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개발금융으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함. 아울러 사회적은행은 기존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의 사회적금융 상품과 사업모델 확대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임
- 금융상품 즉 대출(신용대출, 브릿지자금 대출, 보증대출 등), 펀드 출자 및 운용 등으로 다양하게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함

 - 보증대출의 경우에는 도나 보증재단 등이 역할을 감당하여 자금 공급의 규모를 늘리고 은행 지속가능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대손비율 감소를 위해서 관계형 대안신용평가 시스템 구축 운영이 필수로 판단되고, 대안신용평가 시스템은 기존 은행권 신용평가시스템과 함께 사용되어 기존 신용평가시스템의 한계점과 단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상대적으로 열악한 제주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전용 금융상품도 운용하여 좀 더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인증 사회적경제기업의 양적, 질적 확대를 꾀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존 사회적경제기금의 매칭 대출 기능으로 열악한 기금의 규모 확대 및 운용 효과성 증대 (사회적은행이 매칭한 대출금의 대손은 지자체 및 중개기관이 부담하는 방안)
- 사회적은행이라는 명칭으로 설립할 경우 사회적은행이 낯선 금융소비자에게는 자칫 인증사회적경제기업만 이용할 수 있는 은행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국내에서는 가칭 ESG은행 등 설립목적에 맞는 새로운 은행 네이밍이 필요함
- 사회적은행은 현행법으로도 설립 가능하나, 일반은행들과 달리 사회적은행만의 독립성, 차별성을 위해서는 각 법마다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하지만 법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의 경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각 법상 인가기준으로 두고 있는 감독규정을 개정하거나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빠른 설립을 이끌 수 있음. 이 부분은 정치권 등 입법 주체들과의 충분한 교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금융당국(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 이미 금융기관들이 과포화상태이고 제주지역에도 상당수의 금융기관이 자리하고 있어 제주형 사회적은행 설립의 필요성과 가치를 명확히 설득하여야 함
- 제주의 글로벌 환경가치를 실현하면서 지속가능한 제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제주형 사회적은행 설립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나 여러 가지 법적·제도적 어려움과 도민들의 긍정적인 의향성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제주도지자체, 민간기업, 도민, 금융당국의 협력과 소통이 필요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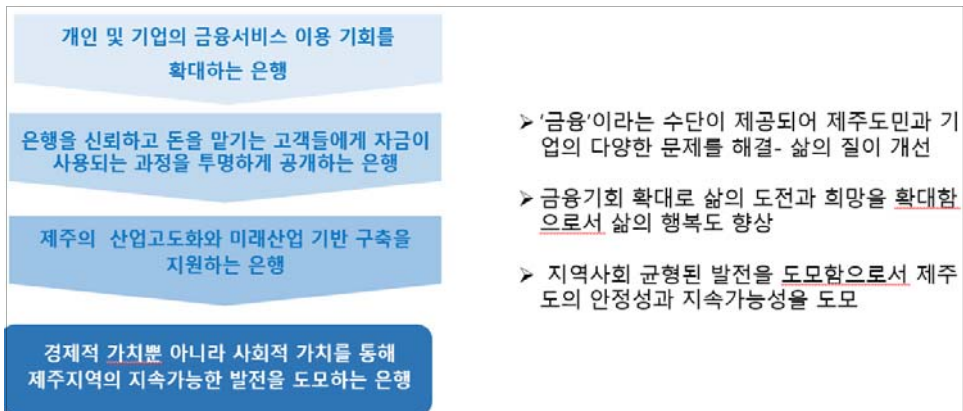
 - 기존의 저축은행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방식도 가능한 방법이고 가장 신속히 진행할

-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운영 전략 및 원칙, 상품 등 대부분의 기존 운영 방향과 상품을 재구성해야 하고 기존 고객에 대한 서비스 유지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아서 이에 대한 면밀한 준비가 필요함
- 사회적은행 설립 준비 기간 동안 제주지역 은행들과 협약을 통해 사회적기업을 위한 상품 개발 등을 시도해보므로서 사전테스트를 진행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임
- 제주형 사회적은행 설립을 액팅하기 위한 TF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설립준비가 진행되어야 함

2. 기대효과 및 한계점

- 제주형 사회적은행이 설립될 경우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음
 - 제주도민과 제주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은행으로, 제주지역 금융소비자의 금융 서비스 이용 기회의 확대, 인내자본 확대로 자금 공급 확대, 사회적 자본의 선순환을 통한 고부가산업 기반 강화, 지역 기반 중소기업, 벤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기업의 성장을 통해 제주지역 경제 주체들의 경제적 역량이 증대됨으로써 제주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할 것임

〈그림 3〉 제주형 사회적은행 기대효과



- 본 연구는 제주형 사회적 은행 설립이 본격화되기 전에 살펴야 할 실제 제주도민들의 사회적은행 설립에 대한 도민 의향성 평가나 민간자금 유치를 위한 조사는 시행하지 못했음. 추후 설립을 위한 추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임

참고문헌

국문 자료

- 금융감독원, 「은행업 인가 매뉴얼」, 2015.7.
- 금융위원회,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2018.5.2.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제1차「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개최”, 2023.02.22.,
- 김선민, “협동조합 금융지원 해외사례 연구”,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2017.1.
- 민병길·김준일, “지역사회적은행 설립에 대한 연구 : 해외사례검토를 중심으로”, 경영경제연구 제44권 제3호, 충남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2022.08.
- ____·이상민, “경기도 도민은행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해외 사례 연구”, 경기연구원, 2015.8.
- 박춘섭·이홍택, “충청남도 사회적은행 개설 및 육성방향”, 충남연구원, 2018.3.
- 박희원, “해외 사회적 은행 사례 분석 : 트리오도스 은행”, Weekly KDB Report, KDB 산업은행, 2017.09.25., 24면.
- 사회연대신협, “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논의”, 2021.08.10.
- 사회연대은행, “사회적은행 설립 연구보고서- 작은 은행, 큰 금융-”, 2022.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의 K-ESG 가이드라인, 2021.
- 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50년사」, 2013.
- 이정민, “사회적 금융 전문기관 설립을 위한 법적 검토”, 원광법학 제36권 제4호,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12.
- ____·노태석, “사회적 금융 특화은행 설립 방안과 법적 과제”, 은행법연구 제11권 제1호, 은행법학회, 2018.05.
- 이준우·권병옥,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 측정을 위한 컨설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2.
- ____·곽원준·안성익·전인·조윤형·차윤석, 사회가치 기본지표(BISV)의 검증 및 지표타당성 확보를 위한 연구 용역,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5.
- 이학승, “사회적 은행의 성공요인과 국내 은행에 대한 시사점,” 주간 금융경제동향 제4권 제16호, 우리금융경영연구소, 2014.4.23.
- 제주도경제정책과, 제주상장기업온라인수요조사, 2023.1.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2023년 사회적경제 발전 시행계획, 2022.12.
- 제주특별자치도, 2022 중소기업지원시책, 2022.
- 조복현, “사회적 금융의 다중목표와 호혜성: 사회적 은행의 이론적 기초”, 한국협동조합연구 제36권 제3호, 한국협동조합학회, 2018.12.
- 카카오 보도자료, “카카오뱅크,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 예비인가 획득”, 2015.11.29.
- 통계청, 사업체조사, 2019.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총회, "사회연대신탁(가칭) 설립 검토", 2021.3.31.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 2020 사회적가치지표 활용매뉴얼, 2020.
 한국사회투자, 한국사회투자 기관소개서, 2022.03.16.
 한국은행, 제주지역 금융기관 점포 현황, 2022.3.21.
 한국은행 보도자료, "2022년 12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2023.01.27.
 한국은행 제주본부, 2022년 9월중 제주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 2022.11.29.
 한국은행 제주본부, 제주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의 지원효과 분석, 2016.12.

해외 자료

Benedikter, Roland. "Social Banking and Social Finance", SPICE Stanford. Spring, 2011.
 Burdge, R. J., & Vanclay, F. Social impact assessment: a contribution to the state of the art series. *Impact Assessment*, 14(1), 1996, 59-86.
 Clark C., Rosenzweig, W., Long, D., & Olsen, S., Double bottom line project report: Assessing social impact in double bottom line ventures; methods catalog, 2004.
 Cornée, Simon & Kalmi, Panu & Szafarz, Ariane. "The Business Model of Social Banks", *Kyklos*, Vol.73(2), May 2020.
 Emerson, J., Wachowicz, J., & Chun, S., Social return on investment: Exploring aspects of value creation in the nonprofit sector. *The Box Set: Social Purpose Enterprises and Venture Philanthropy in the New Millennium*, 2, 2000, 130-173.
 Fernando, Nimal A., Understanding and Dealing with High Interest Rates on Microcredit-A Note to Policy Makers in the Asia and Pacific Region-, *Asian Development Bank*, May 2006.
 Freudenburg, W. R., Social impact assessment. *Annual Review of Sociology*, 12(1), 1986, 451-478.
 Gentile MC, Social impact management, a definition, Discussion Paper II Aspen ISIB: The Aspen Institute, 2000.
 Global Alliance for Banking on Values, Strong Straightforward and Sustainable Banking Full Report, Mar.2012.
 GLS Bank, Anlage-und Finanzierungsgrundsätze, Jan. 2017.
 Kroeger, A., & Weber, C. Developing a conceptual framework for comparing social value cre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39(4), 2014, 513-540.
 Latané, B. The psychology of social impact. *American Psychologist*, 36(4), 1981, 343-356.

- Moreno, Ana Maria, "Grameen Microfinance: An Evaluation of the Successes and Limitations of the Grameen Bank", *Honors Theses (PPE)*, 2010.
- Mykhayliv, D. & Zauner, K. "The financial and economic performance of social banks", *Applied Economics*, 50(34-35), City Research Online, 2018.
- Peng, C. W., & Yang, M. L. The effect of corporate social performance on financial performance: The moderating effect of ownership concentration. *Journal of Business Ethics*, 123(1), 2014, 171-182.
- Santos, F. M., A positive theory of social entrepreneurship. *Journal of Business Ethics*, 111(3), 2012, 335-351.
- Schuler, D. A., & Cording, M. (2006). A corporate social performance-corporate financial performance behavioral model for consumer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31(3), 2006, 540-558.
- Stephan, U., Patterson, M., Kelly, C., & Mair, J. Organizations driving positive social change: A review and an integrative framework of change processes. *Journal of Management*, 42(5), 2016, 1250-1281.
- Tobias, J. M., Mair, J., & Barbosa-Leiker, C., Toward a theory of transformative entrepreneuring: Poverty reduction and conflict resolution in Rwanda's entrepreneurial coffee sector.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8(6), 2013, 728-742.
- Triodos Bank, Annual Report 2021, Mar. 2022.
- Triodos Bank, Annual Report 2021, Mar. 2022.
- Vancity, 2021 Annual Report, 2022.4.
- Wood, D. J.. Corporate social performance revisited.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6(4), 1991, 691-718.

홈페이지

- 사회연대은행 홈페이지, <<http://www.bss.or.kr/>>
- 신나는조합 홈페이지, <<http://www.joyfulunion.or.kr/>>
- 청년신탁추진위원회 홈페이지, <<https://ycus2020.tistory.com/>>
- 청년연대은행토닥 홈페이지, <<http://www.todakbank.org/>>
- 한국사회투자 홈페이지 <<http://www.social-investment.kr/>>
- 희년은행 홈페이지, <<https://jubileetogether.tistory.com/>>
- GLS은행 홈페이지, <<https://www.gls.de/>>
- Grameen bank 홈페이지, <<https://grameenbank.org/>>

TheBanks.eu 홈페이지, <<https://thebanks.eu/>>

Triodos Bank 홈페이지, <<https://www.triodos.com/>>

Vancity 홈페이지, <<https://www.vancity.com/>>

연구진

연구책임	정 운 영	한국금융복지정책연구소 대표
공동연구	이 종 익	한국사회투자 대표
	이 정 민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객원연구원

자문진

자문위원	이 상 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 준 우	한밭대학교 융합경영학과 교수
	오 영 환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사무총장
	박 양 수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원장

현안연구 2023-03

제주지역 사회적은행 설립 방안 연구

발행인 || 양 덕 순

발행일 || 2023년 3월

발행처 || 제주연구원, 한국금융복지정책연구소

63147 제주시 아연로 253

TEL. (064)729-0500 FAX. (064)751-2168

www.jri.re.kr

인쇄처 || 온누리디앤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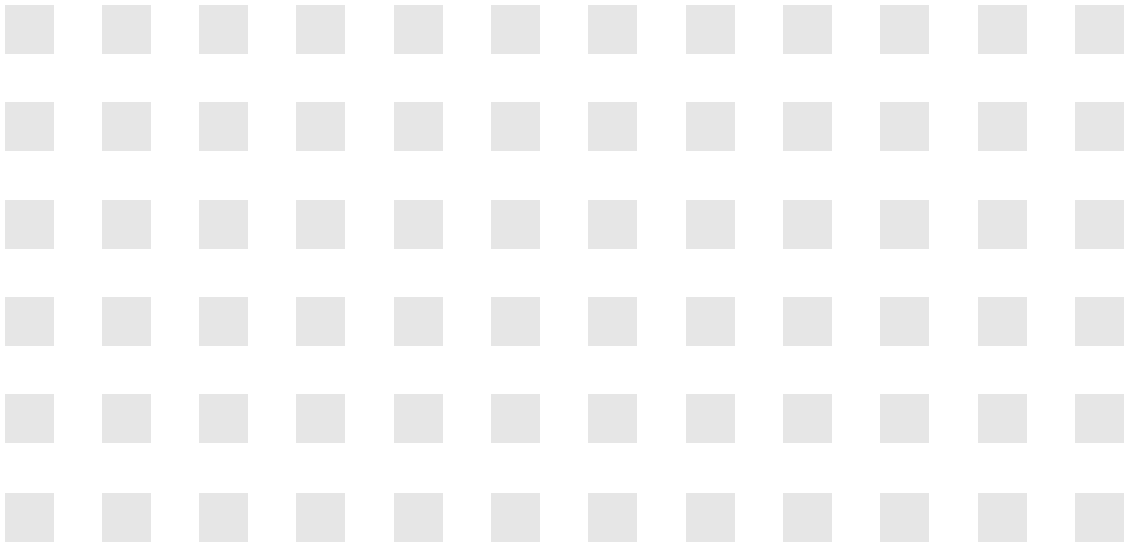
ISBN 979-11-93025-02-4 93330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6314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연로 253
Tel. 064-729-0500 Fax. 064-751-2168
www.jri.re.kr

JEJU RESEARCH INSTITUTE



비매품/무료

93330



9 791193 025024
ISBN 979-11-93025-02-4